[일련번호: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총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징계

[제 목] 행정9급 특별채용공무원 임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특별채용 현황

	임 용 전	이 있 가 젊.	6) () () -)	nj –	
소속	직 급	성 명	임용사항	임용일자	비고
문화공보실	조무원(조무)9급	000	행정서기보시보	2005.5.2	
총 무 과	조무원(조무)9급	000	행정서기보시보	2005.5.2	
총 무 과	조무원(조무)9급	000	행정서기보시보	2005.5.2	
세 무 과	조무원(조무)9급	000	행정서기보시보	2005.5.2	
간 석 4 동	조무원(조무)9급	0 0	행정서기보시보	2005.5.2	
논현,고잔동	조무원(조무)9급	000	행정서기보시보	2005.5.2	

2. 위법부당내용

○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기능직공무원 과원해소를 위한 제한경재특별임용 실시계획(2005.3.3) 및 기능직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제한경쟁특별임용계획(04.9.30)』을 수립하여 200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세험시행계획 공고(남동구 인사위원회 공고 2005- 호)에 의하면 선발예정인원(행정9급 7명), 시험과목(사회, 행정학개론) 제1차시험 필기, 제2차시험 면접으로 치루어 지며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동구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으로 사무보조직렬의 워드,필기직류 또는 조무직렬의 조무직류로서 임용예정직급 상당의 경력(행정사무보조)이 3년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원서교부 및 접수 2005.3.17-3.18(2일간) 필기시험 2005.3.27(14:00-)을 공고하였다

이에 2005.3.28 인천광역시남동구인사위원회 공고2005-5호로 필기시험합격 자 8명을 공고하였고, 2005.3.30 남동구청4층 제2회의실에서 면접시험 실시하여 2005 .3.31 인천광역시남동구인사위원회-38로 위현황과 같이 2005년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시행결과 통보를 받았다

- 지방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한 직 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쳐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특별임용의 요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임용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예 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 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되어 있으나
- 동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제3호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2에서 사무보조직렬은 워드,필기,계리,사서직류가 해당되고, 조무직렬은 조무,사송,검침,검수표, 주차단속,교통지도로 직류가 구분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4조 제1항 관련 별표5의 나항에서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인사지침(92-1)에서도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 행정직렬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의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무직 렬등의 근무실적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제3호에 특별임용요건으로 규정한 임용예정직급(행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행정 직으로의 특별임용은 사무보조직렬만 가능한 것이다
- 기능직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제한경쟁특별임용계획(2004.9.30) 및 기능직공 무원과원해소를 위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실시계획(2005.3.3)에 의하면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사무보조와 조무직렬의 조 무직류까지 포함시키며 자격제한으로 남동구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으로 사 무보조직렬의 워,필기직류 및 조무직렬의 조무직류중 행정보조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조무직렬의 조무직류에 속하는 자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분장표 제출"이라는 인사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기준을 각 실,과,소,동에 통보하였고

- 응시자유의사항에 의하면 조무직렬 조무직류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업무분 장표사본(원본대조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전 근무부서의 폐치, 분 합등으로 업무분장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속부서장이 발급한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 제출 토록하는등 인사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기 준을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 남동구에서 특별임용을 희망한 19명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특별임용요건으로 규정한 임용예정직급(행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16명의 부적격자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토록 기회를 제공하게되었고
- 그 결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용시험으로 인하여 2005.3.27 9급 행정직특별임용시험에서 합격한 7명중 조무직렬 6명의 부적격자가 2005.5.2 행정9급으로 특별임용하게 한 사실이 있는 등 행정9급 특별채용공무원 임용을 위한 순위고사를 법령에 근거 없이 부적정하게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의 특별임용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처 분 요 구]

○ 관련규정을 위반한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ㆍ기관명] 남동구청 총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징계

[제 목] 의료기술9급 특별채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2004.12.3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계획수립(구청장 결재)
 - 의료기술(치위생사)9급: 1명
- 2004.12.3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계획(안) 사전심의 및 특별임용시험요구
- 2004.12.6 2004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남동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 응시연령 : 18세 40세
 - 자격.경력제한
 - ㆍ치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취득후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 접수기간 : 2004.12. 16 12.18 - 면접시험 : 2004.12.22(14:00-)
 - 응시인원 : 12명
 - 최종합격자

성 명	임용사항	임용일자
	지방의료기술서기보시보에임함	
000	9급 3호봉라(0년 나)를 급함.	2005. 1.10
	보건소 근무를 명함.	

2. 위법부당내용

○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결원직렬(의료기술 9급)의 인력조기충원으로 현업부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위현황 같이 2004년도 제1회인천광역시남동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응시연령 : 18세 - 40세.

응시자격,경력은 치위생사 자격증 소지자중 자격증취득후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가 응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 접수결과 총12명이 접수를 하였고, ○○○, ○○○, ○○○, ○○○ 4명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자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하여 응시자 12 명 모두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경력증명서가 모두 적격 하다고 심사하였다
- 2004.12.22 면접시험결과 응시번호 8번 ○○○(○○.○○.○○일생)이 총첨53.00, 평균13.25점으로 1순위로 선정되어 2004.12.23 2004년 제1회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최종합격자로 의결되었다
- 그러나 최종 합격자 ○○○은 ○○○대학(2002년2월졸) 치위생과를 전공한 자로 치과위생사면허증(2002.4.2)을 취득한자이며 ○○○○○치과병원(○○ ○)에

2002.1.26~2004.12.17까지 2년10월21일 동안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4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남동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응시자격에 의하면 치위생사 자격증 소지자중 자격증취득후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가 응시하여야 한다.라고 공고하였음에도 응시자 서류접수시 관련자격 적격여부를 확인치 않았으며,서류전형면접관 4명 역시 모든 서류가 적격하다고 심사하여 최종합격 시킴으로 써

2005.1.10일자로 지방의료기술서기보로 신규임용 후 남동구 보건소에 현재까지 근무하는등 특별채용시험업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처 분 요 구]

○ 관련규정을 위반한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총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남동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남동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개정지연]

○ 인천광역시에서는 총무과-19629(2004.12.7)호로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표준안 개정 이첩시달"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직무 대리규칙표준안을 시달하면서 조속히 개정.시행토록 초구하였으나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권한대 행및직무대리규칙 개정을 지연하고 있다.

[보직관리(전보)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민원업무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월 감사. 법무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없다
- 1. 시.도에서 실,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 보좌 기관내에 서 전보하는 경우
 - 2.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

의 전보

- 3.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 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전보제한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 월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지하는 경우
 - 5.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 7.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 8.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 9.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 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별첨과 같이 관련규정에 적합하지도 않은데도 "업무적임자" "직위 공무"라는 이유로 보직관리기준을 위배하여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처 분 요 구]

○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 시기 바라며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공무원을 무원칙하게 전보 조치하는 사 례가 없도록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총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남동구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징계, 직위해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혐의당시	7] 그	λJ	Trì	사법기관통보	ə] 님 j]] Q	미처분된
소속	직 급	성	명	사 항	처분내용	범죄사항
				도로교통법위반	구약식	2002.4.20
남동구	7급	00	\circ			도로교통법(음주운
				(음주운전)	2005.8.12	전)벌금70만원
						97.9폭력
1157	77.			폭력행위등처벌	구약식	2000.8폭력
남동구	7급			에관한법률위반	2005.5.23	2002.4음주운전
						2002.11폭력

2. 위법부당내용

[사법기관통보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제3항에 의하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릉 종료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 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 하고 있다

- 행정7급 ○○○과 임업7급 ○○○은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과 품위유지를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 도로교통법위반사실, ○○○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류에 "전과처분 및검찰관계"확인란에 명시되어 범죄은폐 사실이 확인되었다.
- 기획감사실 감사팀은 사법기관범죄사항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위법사항을 확인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 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

[비위공무원 문책에 관한 사항]

- 2005.9.6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위공무원 적발통보와 관련하여 "건축과장 ○○○, 건축주사 ○○○, 건축주사 ○○○, 건축주사 ○○○ "등 이자들은 2005.9.1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까지 인천남동구 만수동 ○○○-○○ 소재 ○○건축사무소에서 화투51매를 이용하여 판돈 939,000원을 가지고 3점을 먼저 득하는 승자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 7점에 3,000원을 지불하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는등 34월경부터 주 2~3회 가량 같은 도박을 한범죄사실이 통보 되었다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의 해제)에 의하면 "제1항 임용 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남동구 기획감사실-12490(05.9.22)호로 위자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위반 같은 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위반, 같은법 제55조(품위유지의 위반)위반 "으로 비위공

무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징계요구를 하면서 이 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2005.9.7일자로 건축과장 〇〇〇을 총무과에 대기시키는등 인력관리 부적정 하였다

[처 분 요 구]

-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범죄사실 통보처리시 유사한 사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 하시고
- 총무과장은 징계업무추진시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업무처리하 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총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승진후보자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조 정 사 유	조 정 시 기
•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신규임용 포함)	전입일
•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성적통보일
·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	도달전일
•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사유발생일
응시 자격정지 사유가 해제된 경우	(7)
• 근무성적을 예외평정한 경우	사유발생일
·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제출일

- 승진후보자명부의 삭제 및 시기
 - · 승진, 전직 또는 승지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 · 승진임용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등
 - 명부조정일 : 사유발생일

2. 위법부당내용

○ 남동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및 평정규칙 제27조 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월31일과, 7월31일을 작성기준일로 하여 근무성적 평정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승진임용시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제31 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나

- 총무과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를 관리함에 있어 위 현황과 같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 사유발생시 명부조정을 하여야함에도 200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많게는 51일 이상, 적게는 1일이상 경과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을 해태 하였다
- 또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제8항에 의하면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행절차로 는

가.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란을 주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 재하고 인사 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 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라. 결재문서의 명부간 및 명부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고 승지후보자명부를 특별히 관리 하여야 하나, 총무과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및 삭제사유 발생시 새로운 명부를 출력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사용 하는 등 가 내지 라 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업무추진 부적 정 하였다

○ 총무과에서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전산화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 출력 사용 함에 따라 구축이 완료된 현시점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확인자 의견을 부기하였으나 승진후보자명부는 그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할것

임

[처 분 요 구]

○ 승진후보자명부를 관리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 하시 기 바랍니다 [일련번호: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만월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정비공사 지명경쟁입찰 부적정

[현황]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업체명
만월산일원 사방 및 등신로정비공 사	′ 04. 5.24	′ 04. 8.21	238,573	209,900	00

『입찰금액비교』

(단위:천원)

구 분	부가세포함	부가세 제외	일반경쟁입찰
설계금액	238,573	227,749	238,573
예정가격	234,994(98.5%)	224,332	234,994
낙찰금액	209,900(89.32%)	200,372	206,195
※ 부가세 제외 :	재료비 및 기계경비	비 108,245천원은	포함(부가세 10,824
처워)			

[위법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에 의할 계약) 제1항에 제8호에 의하면 지명 경쟁입찰에 부칠수 있는 경우로서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8호 아목에 의하면 다른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법 제5조(산림사업의 시행자등) 제4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 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정의) 제1항 1에 의하면 산림이라 함은

-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임도,
-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법 제46조제1항제3호 다목에는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 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임도의 시설 및 보수·사방·산림형질변경 지 복구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5호에 근거하여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 지명경쟁입찰 부적정

남동구에서는 시민의 건강생활유지와 자연생태계보전 및 산림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만월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만월산 일원 10개소 5.71㎞에 데크로드 등 등산이용시설, 등의자 등 편익 및

운동시설, 방향표시판 등 등산보조시설 등 시민들의 등산과 건강생활유지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경영재정과에서는 2004. 5. 4 도시정비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하여 계약의뢰가 오자 당해 사업을 산림법 제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 판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8호 아목, 산림법 제5조(산림사업의 시행자등) 제4항 및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제1항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인천산림조합, 강화군산림조합, 옹진·부천산림조합을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로 선정하여 입찰을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등산과 건강생활유지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사업으로 볼수 없으므로 당연히 산림법 제5조(산림사업의 시행자등)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하거나 위탁하여야 할 사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제1항 제3호 다목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은 산림조합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은 어떠한 경우로도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이 아님이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사업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사업의 성격과 계약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므로서 이는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타업체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하였습니다.

②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 부적정

당해 규정을 근거로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인천

산림조합, 강화군산림조합, 옹진·부천산립조합을 대상자로 지명 경쟁입찰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당해 조합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초금액을 작성하여 입찰을 실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입찰결과를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38,573 천원(부가세 21,688천원)으로 설계하여 계약의뢰를 하였고, 경영재 정과에서는 당해 금액을 기초로 하여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인천산림조합이 예정가격 234,994천원 대비 89.32%인 209,900천원 으로 낙찰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입찰을 실시할 경우 직접재료비 107,452천원과 기계경비 794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824천원을 제외하면 기초금액은 227,749천원이 되며, 이를 입찰되었던 낙찰율을 적용하면 예정가격(98.5%) 224,332천원, 낙찰금액(89.321%) 200,375천원으로

- i) 낙찰율만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9,525천원(209,900천원 -200,375천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 ii) 일반경쟁입찰로 입찰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 낙찰하한선이 87.745%인점을 감안할때 206,195천원으로서 3,705천 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됩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당해 『만월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정비공사』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계약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편법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함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또한 입찰기초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검토도 없이 발주부서에서 온 설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입찰을 실시함으로서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어떠한 형태로든 회계담당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1.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입찰 등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입찰실시를 위한 기초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부가세 등 제반 경비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3.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공사 외 1건 선금 및 하도대

가지급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계약일		계약일 준공일		설계	계약	선금액	업체명
사 업 명	계약될	正了是	금액	금액	선급액	업세명		
남동구민체육센터신축공사	′ 04. 2.1 3	′06. 3.11	6,549,290	5,652,000	246,670	○○건설외1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공사	'04.12.22	' 05.11. 9	1,119,040	968,382	387,200	○○건설		

『하도급 계약내역』

(단위 : 백

만원)

र्ग भी मन	ठी	-도계약내	8	비고	
사업명	하도분야	하도금액	대가지급		
남동구민체육센터신축 공사	토목공사 등 8 건		- 직불 : 4개사 - 지급보증 : 2개 사	' ' ' '	
장수서창동 신축공 사	기계설비공시등 4 건	375	- 전체 직불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 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 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는 수급 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 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 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 (하도급대금 의 직접지급)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 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와 5. 수급인이 하수급 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의 지급보증서를 교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등) 제3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하도급 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동 예규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대한 대가지급청구서(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

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사감독 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조(채권확보)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고,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남동구민체육센터신축공사

당해공사는 토목공사 등 8건의 전문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 계약시 4개사에 대하여는 직불동의를, 2개사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을 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급대가 지급과정을 보면 직불합의가 없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아니 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에 의거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금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하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직불동의 및 지급보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어야 하고 또한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차기 기성금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기성금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도록 하여 확인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기성금 전액을 원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공사

『장수서창동 청사 신축공사』는 사업기간 2004.12.22부터 2005. 8.19까지, 계약금액 968,382천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상대자는 전문공사 부분인 기계설비공사 및 토공사에 대하여 2004.12.30 124,542천원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하여 2004.12.30 100,100천원에, 실내건축공사에 대하여는 2005. 9. 7 150,000천원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여 발주자에게 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때 하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대치용으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준공일은 당초 2005. 8.19에서 11. 3로 설계변경 등의사유로 연기 되었으며 대가지급과 관련하여는 2005. 3.28에 387,200천원을 선금으로 원도급자인 〇〇건설(주)에 지급하였고 제1회기성금은 2005. 6.20에 194,091천원을, 제2회기성금은 2005. 9. 5에 308,474천원을, 제3회기성금은 2005.10.21에 319,396천원을 원도급자인 〇〇건설(주)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② - 1 하도급 대가지급 부적정

당해공사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고 하도급 계약시 직불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기성금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하도급 대가를 분리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내용에 따라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나 조치없 이 원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또한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차기 기성금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기성금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지 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도록 하여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 또한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기성금 전액을 원도급자에 게 직접 지급하는 등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자금집행업무를 소 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 2 선급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선금 387,200천원을 지급한 2005. 3.28에는 기계설비공사 등 3 건에 대하여 224,642천원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선금 역시 하도계약 부분에 소요되는 내역을 받아 하도업체에 직 접 지급하거나 원도급자 해당 부분만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총 계약 금액에서 하도계약 부분을 제외하고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에도 순수하게 원도급자 해당부분은 공사금액이 743,000천원으로 서 이에 대하여 최대 50%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371,870천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액 387,200천원 전액을 지급하므로서 15,33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또한 공사기간이 당초 2004.12.22~2005. 8.19에서 2005.11. 9로 연장되었으므로 선금지급요령 제3조에 의거 기 지급된 선금에 대한 보증서 역시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 받아야 함에도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선금 및 기성금 등 대가지급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1. 하도급공사의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이 관계규정에 따라 하도업체에 정확히 지급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앞으로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시부터 철저히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2. 또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선금 지급 가능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하도 록 하시고 또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보증기간을 연장조치하는 등 선금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조달계약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준공기한	설계금액	계약금액	조달수수 료
관내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공 사	′ 04. 7.15	′ 04. 9.23	132,209	112,000	4,452
구동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공사	'04. 8.18	'04.10.15	568,157	523,452	1,196
계					5,648

[위법부당내용]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제5조 (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각 수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또는 비축물자를 구매·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등) 제1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의 장은 그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 30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동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자치행정과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계약한 『관내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공사』와 『구·동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조달청에 계약의뢰 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고, 또한 필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 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에 대하여충분한 검토절차를 이행한 후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의뢰하거나자체적으로 입찰의 절차를 거처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발주부서에서 설계하여 자치행정과에 계약의뢰하면서 조달계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이를 조달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달의뢰 하므로서 조달청에서는 이를 각각 물품으로 분류하여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의 절차를 소홀히 하므로서 타업체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게 하였고 또한 5,648천원의 조달수 수료가 낭비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자체계약이 가능한 계약을 특별한 사유나 검토 없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단체수의계약하거나 수수료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불법광고물(벽보) 부착방지판 구매.설치 발주 및 입 찰 부적정

[현황]

사 업 명	계약일	준공기한	설계금액	계약금액	업체명
불법벽보 부착 방지제 (실리콘) 설치공사	′04. 9.14	'04.10. 5	29,810	28,361	○○씨엔 씨
불법광고물(벽보) 부착 방지판 구매.설치	'04.12.29	' 05. 1.18	55,936	53,139	○○테크

[위법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 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 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0조(특허및상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31 1992. 9.23) 및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41301-965 2002. 7.18)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시방서 등에서 정한 품질·성능 이상의 물품인경우에는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다수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없도록하고 있어 물품의 구매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과도한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공사(물품구매) 발주 부적정

남동구 도시정비과에서는 외래방문객이 빈번하고 불법벽보 상습부착지역인 남동로변의 전신주, 가로등에 불법광고물(벽보)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자 2004년도 본예산에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사업 86,620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의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당초 『불법벽보 부착 방지제 설치

공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i) 1차 사업으로 인주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04. 9.10부터 9.30까지(20일간) 불법벽보부착방지제(실리콘)도포 공사비 29,854천원을 설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ii) 2차사업으로 잔여예산 56,000천원은 소래길, 석정로, 남동공단도로를 대상으로 2004.10 ~11월에 불법벽보 부착방지판(방지도료)설치공사를 추진하겠다고 결재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벽보부착방지관련 사업은 2002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서 당해년도 하반기에야 와서 사업의 특성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분리하여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 도 아무런 검토 없이 분할하여 발주하므로서 1차 계약분(설계금 액 29,810천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질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계획분에 대하여도 당초 2004.10~11월중 불법벽보 부착방지판(방지도료) 설치공사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초계획대로 추진했어야 함에도 회계연도마감이 임박한 2004.12.14에야 방지도료 방법이 아닌 부착방지판을 구매・설치하겠다고 설계를 하여 경영재정과에 계약의뢰 하므로서 계약부서에 검토할 여유도 없이 긴급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② 물품구매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적정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물품의 구매·설치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발주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계약의뢰 할 때에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이 필한 제품으로 제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입찰 및 계약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입찰공고시에 물품에 대한 사양조건이 아닌 업체에 대하여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이나 의장등록을 갖고 있는 업체로 부적정하게 제한

하여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을 보더라도 최초 입찰에서나 재공고 입찰에서도 입찰참가자가 없어 이를 근거로 하여 부산시에 등록된 청우 테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i) 그러나 당해 제품이 생산된지가 얼마되지 않아 실용신안등록이나 의장등록을 필한 업체는 드문 경우로서 입찰전에 인천지역내에 당해 업체가 있는지 여부 및 가격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조건을 타당하게 입찰을 실시하거나 최초 입찰시 참가자가없었다면 지역을 확대하거나 자격을 완화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검토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재공고입찰까지 실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초 발주부서에서 견적서를 제출받은 ○○테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불합리한입찰절차라고 밖에 볼 수 없고
- ii) 또한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자가 없어 국계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다면 견적서는 1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면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결정하도록하고 있는 만큼 당해사업 역시 2개이상의 업체에 대하여 견적을제출 받은 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함에도 바로 청우 테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회계담당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처분요구

- 1. 공사 발주는 원칙적으로 단일사업은 일괄 발주하도록 하시고 특별한 사유없이 분할발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써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2. 또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ㆍ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이월사업 선금지급 부적정 및 정산미실시

[현 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준공기한	계약금액	선금지급액	선금지급일
만수3동청사 신축 정보통신공사	′04. 8. 4	2005. 4.	55,958	27,979	2004.12.14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제2조(적용범위) 제8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예규 재4조(선금의 사용) 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 원은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 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채권확보)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

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만수 3동청사 신축 정보통신공사』는 계약이행기간이 2004년 8월 4일부터 2005년 4월 6일까지로 당연히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었으므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신청하자 선금 전액을 지급해야할 아무런 검토도 아니하고 바로 선금전액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계약이행기간도 당초 2005. 4. 6에서 2005. 6. 9로 연장되었으므로 지급된 선금에 대한 보증기한도 계약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증서를 연장하여 제출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금 전액사용시에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사업이 준공되어 준공금이 지급되고도 선금사용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선금 지급 및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계약기간 및 지방자치단 체 선금지급요령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ㆍ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남동구 ○○회관 신축공사비 보조 부적정

[현 황]

○ 위 치 : 남동구 구월동 ○○○○-○, ○○, ○○(3필지)

○ 사업규모 : 대지 672.2㎡, 연면적 2,519.13㎡

○ 추진기간 : 2002 ~ 2006

○ 사 업 비 : 2,672백만원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0조(예산의 편성) 제2항 2호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 · 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시 · 군 · 자치구의 사업비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규칙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제3항에 의하면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동구○○회관 신축경위를 살펴보면 남동구○○회에서 2001. 10월 남구로부터 회관을 인수한 후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회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2.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3. 10월 공사계약을 하여 2006. 1월에 준공완료 하였고, 투입된 사업비는 용역비, 건축공사비, 제공과금등총 2,671,559천원으로서 전액 남동구 자체예산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2. 4.17 남동구○○회에서 향군관련단체들의 입주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계획안은 제출하면서 협조를 요구하자 남동구 총부과에서는 2002년 2회추경에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 예산 5억원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한 후

2002. 9. 6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〇〇회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검토를 의뢰 하였고,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2002. 9.25 i) 2회추경시 반영된 예산 5억원은 "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집행하고 ii) 예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히 반영할 것이며 iii)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투융자심사 확행해야 한다고 회신하면서 특별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교부시가능, 자체재원 충당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002.10.31 자체투융자심사결과는 사업기간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로, 사업비는 총 2,130백만원으로서 재원부담은 교부세 1,000백만원과 구비 700백만원 민자 430백만원으로 조달하도록되어 있으며, 교부세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을 검토한 후 추진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2002.11. 5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 2002년도 하반기 투 · 융자사업 심사결과 통보하면서 심사의견을 반영하고 조건해소후 추진(예산부서에 보고후 추진)하도록 하였고, 2002.11. 6에는 재차 2002년도 하반기 투융자심사 결과 추가 통보하면서 i) 기확보된 예산은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ii) 추후 사업비는 재원확보계획에 의거 교부세 확보 및 도시계획 검토 후 추진(자체구재원 지원 부가)하도록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국비확보나 도시계획 검토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였고, 또한 국비보조 재원 확 보가 어려웠다면 자체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고 투융자심사를 다시 의뢰하여 심사를 거친후 보조금을 지원 했어야 함에도 총무과에서는 당초 투자심사결과 조건에 대 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 였고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남동구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해야 할 부서로서 예산은 투융자심사 확행여부를 확인한 후 편성하여야 하고, 특히 이 이 회관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2002년 투 · 융자사업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심사의견을 반영하고 조건해소후 추진(예산부서에 보고후 추진)하도록 하는가 하면 추후 사업비는 재원확보계획에 의거 교부세 확보 및 도시계획 검토 후 추진(자체 구재원 지원불가)하도록 강조한바 있어 당해 예산편성 요구가 왔다면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에 아무런

검토도 없이 예산을 반영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총무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2004년까지는 국비 및 시비 등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2005년도의 경우에는 예산 1,729백만원(제1회 추경포함)을 자체예산으로확보하여 지원한 후에 자체예산 1,729백만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자료로 제출하여 반영도록 하였고, 또한 이후 바로 제2회 추경예산에 보조금 600백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571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계획을 편법적으로 수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동구○○회관 신축공사비 보조사업은 당초 2002 년 투융자 심사시 남동구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의 공통적 애로사항인 재정운영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재원으로 무리하게 지원하였고, 또한 이와 관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편법적으로 수립하는 등전반적으로 열악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1. 앞으로는 투·융자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사승인 을 받은 후 예산반영 등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 2. 또한 조건부 승인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사회단체(축구연합회 등) 보조금 부당지원 등

[현 황]

(단위 :천원)

141-	단체	총 사 업 비		보2	보조금결정내역			ען די	
년도		계	자체부담	보조금	신청액	심사결정	교부액	용도	비고
2003	00	62,188	35,188	33,000	39,860	33,000	27,000	남동구청 장기대회 (축구등11)	농구대회 미개최 (3,000)
	00	4,000	1,000	3,000	-	-	3,000	남동구청장 기축구대회	
2004	00	58,221	38,721	21,000	40,260	21,000	19,500	남동구청 장기대회 (볼링등10)	농구대회 미개최 (1,500)
	00	5,405	1,405	4,000	29,000	4,000	4,000	남동구청장 기축구대회	
2005	00	54,400	38,440	18,000	38,930	18,000	16,000	남동구청 장기대회 (볼링등9)	볼링대회 미개최 (2,000)
	00	8,000	3,000	5,000	5,000	-	_		

[위법부당내용]

사회단체육성 및 시민운동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그 지원 목적 및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규적 성격을 갖는 예산편성지침에 지원대상단체는"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의 효율적인 국가체육 정책(생활체육활성화) 실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7조와 민법 제32조에 의거 종목별 연합회로 구성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국시비의 예산지원은 물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로 문화관광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청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보조)를 할 때에는 종목별 연합회로 구성된 법적단체인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03년의 경우 남동구청 장기 축구대회 개최 등 11개 종목의 사업비보조를 남동구 ○○협의회의 신청을 받아 동 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였으므로 남동구 ○○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한 때에는 남동구 ○○연합회가 위 단체에서 탈퇴(제명) 하였다는 사유로법적 근거없이 임의단체 성격인 남동구 ○○연합회에 직접 3백만원을 교부하였으며

2004년의 경우에도 법적단체인 ○○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고 임의단체인 남동구○○연합회로부터 직접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는 바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직접 임의단체인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도록 심사 결정함에 있어 2004년 전체 사회단체보조예산편 성총액(2003년 344백만원, 2004년 500백만원)이 45% 증가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할 법적단체인 생활체육 협의회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주관부서(문화공보실)의 검토의견과 상이하게 형평성 있는 타당한 사유없이(○○협의회에 한정하여심사주관부서에서 A,B,C 등급을 책정하였으나 타 단체사업은 등급 미책정) 전년대비 36%를 삭감한 21백만원(2003년 : 33백만원)을 책정한 반면 ○○연합회의 보조금은 당초 방침상 전년도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도 심의회검토서 작성시 오히려 33%를 증액한 4백만원(2003년 3백만원)을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작성, 심사결정하므로서 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생체협의 보조금 부족으로 사업이 곤란하자 추후 일반예산에서 1,050천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액을 심사결정하는 구청의 핵심보직에 있는 총무과장은 구의 중견간부 공무원으로서 임의단체인 남동구 ○○연합회 회장(2004년), 수석부회장(2003년)직에 있으면서○○협의회의 활성화 및 갈등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평성을 벗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결정하도록 한 결과 민원을 야기하고 보조금에 대한정산을 함에 있어서도 전체사업비(자부담 및 보조금)에 예산집행현황을 제출하지 않고 지급금액도 확인되지 않은 정산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1. 앞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단체간 불만이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검토나 작성시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 효과적인 사회단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1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ㆍ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지출(원인행위) 부적정

[현 황]

부서명	년도 예산액			잔 액	비고		
十八つ	でエ	예산액	계	카드사용	현금지급	신 벽	
0000	2004	19,000	16,839	16,389	450	2,611	
	2005	10,000	9,420	9,420	-	580	

[위법부당내용]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품의(원인행위) 후 그금액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되(1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임의적용)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되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접대성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코자 할 때는 집행대상자(상대방)를 확인할 수 있는명단에 의거 참석인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집행품의를 해야 함에도

2004년 및 2005년도 문화홍보실의 업무추진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접대성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함이 없이 00명 또는 000외 0명 등으로 집행품의하여 지출함에 따라 업무추

진비집행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게 집행하였음은 물론 2004.12. 2 출입기자단 구정설명회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시책추진 50만 원)의 집행품의에 첨부된 참석자 명단은 11명임에도 22명으로 집행품의를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바, 앞으로는 집행의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시어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ㆍ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1,950,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2005년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예산혂액

37,000,000원

○ 집 행 액

36,975,160원 (99.9%) 234건

- 현금지출

(166)건 13,490,000원(36.5%)

• 직원 경조사비

55건 1,880,000원

• 유관기관 경조사비

40건 1,880,000원

· 개인친분간 경조사비 43건 1,950,000원

기타

28건 7,780,000원

(洞방문 격려3,400千원, 직원 격려 2,100千원 등)

※ 경조사 비용은 1건당 다수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액 총건수와 일치하지 않음.

- 물품구입

45건 8,518,440원

• 부속실운영물품

14건 1,255,340원

• 직원격려물품

10건 3,771,000원

· 유관기관 격려 및 선물 8건 2,036,100원

• 기 타

13건 1,456,000원

- 직원·유관기관 간담 71건 14,966,720원 ・ 직원격려 오,만찬 45건 9,545,500원

· 시책추진관련 간담 26건 5,421,220원

[위법부당내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이나, 주민의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금이므로 무엇보다 공적이며(사적집행 금지원칙)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 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① 업무추진비 총액기준 현금 과다 집행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 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제시하 고 있으나, 남동구의 2005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업무 추진비총 37,000,000원 중 현금지출이 13,490,000원으로 36.5%를 차지하고 있어 기준 보다 상향 지출한 바 있습니다.

② 업무추진비의 사적 집행

업무추진비로 공적인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경비의 대상이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속기관 직원의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유관기관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남동구가 업무를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단체 임원, 또는 전직 공무원에 대해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사적인 것으로 사적집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남동구에서는 사적인 경조사비로 총 43건, 1,950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③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 유관기관 협조 등 그야말로 꼭 필요한

공적인 것에 집행되어야 하나, 남동구에서는 직원에게 수당형식으로 월 20만원씩 11회에 걸쳐 총 2,100천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고, 또한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핸드폰, 난방용 라디에타 등)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의하면 승진인사 등 인사와 관련하여 축화 화분을 보낼 때에는 3만원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남동구에서는 ○○소방서장 취임시 화분 50,000원, ○○○시장 취임시 50,000원, ○○성당 축성식에 100,000원의 화분을 부당하게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1.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바, 현금지급한도, 사적집행금지, 목적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 시고
- 2. 사적인 경조사비로 집행된 1,950,00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위법부당내용]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영재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512천 원
[신분상 조치] 경징계 1,
[제 목] 사무환경개선 사무용가구 구입 계약에 관한 사항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3-6)」 제12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제24조에서는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때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제125조는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하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비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이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에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하고,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

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 인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에서는 2005. 8.11. 같은 구총무과에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구입(품의금액: ₩90,165,00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의 계약을 의뢰받아, 2005. 8.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중소기업촉진법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 ○○○과 수의시담대상으로 하는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같은 날 위 업체에 단체수의계약 체결및 수의시담 일정을 통보하여, 2005. 8.1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경영재정과 입찰실에서 계약금액 ₩85,350,000-, 지체상금율 0.15%, 납품일자 2005. 9. 8.(요구부서 납품기일)로 하는 사무환경개선 사무용가구 구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발주요구부서의 납품기일을 계약부서에서 임의 변경 불가)

그러나, 경영재정과에서는 계약서의 납품기일(2005. 9. 8.)이 4일 경과한 2005. 9.12.에 납품되었음에도 지체상금

₩512,100-(85,350,000원× 0.15%× 4일) 상당을 납부토록 하지 않고 당초 계약서의 납품기일(2005. 9. 8.)을 2005. 9.18.로 임의 수정하여 지체상금을 면탈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에서는 납품일자 수정으로 인하여 미부과된 "사무환경개선 사무용가구 구입"의 지체상금 512천 원 상당을 "인천 경기 ○○○○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징하 시고, 앞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회계사 무를 처리하시어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

[행정상 조치] 주의 및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경징계 2, 훈계 1

[제 목] 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지적측량 용역중지 등 부 적정

[위법부당내용]

(구)○○○○○○사업법에 의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 환지계획의수립 → 지장물 등 수용 사용할 토지의 보상·수 용 → 공사시행 → 환지확정지적측량 → 공사완료공고 → 환지처 분 → 청산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업지구내의 환지 확정지적측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경계석 설치 유무)이 완 료된 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 용역을 발주하여야 함에도

'97.6.25.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서창지구 ○○○○○○사업의 경우 ① 2-1호선외 4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은 물론 지구내 도로인 소로 2-1호선 및 2-3호선의 경우 감사일 현재까지보상이 왼료되지 않은 실정('06.1.26.수용재결신청)으로 환지확정측량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05.6.4. 위 현황과 같이 용역을 발주한 결과 공사 미시공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환지확정측량이 중단되고 있으며,

② 용역수행자가 지구계 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환지확정지적

측량을 실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05.10.26. 계약기간의 연장(100일)을 요청하자 해당구간 공사시공의 전제조건인 수용사용 할 토지의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완료시점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공사가완료될 때까지 용역수행을 중지토록 통보하고 보상 및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용역을 재개토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현실검토 및 아무런 근거 없이 '06.3.30.까지 100일간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또한 '03.12.26. 지구계도로 등의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사업인정(변경허가)을 받았다면 즉시 보상절차(보상계획수립 → 보상계획공고 → 보상협의 → 수용재결신청)를 일괄 신청하여 사업이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04.6.22.부터 '05.2.17.까지 3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보상협의 통지를 한 후 '05.4.25. 재차 보상협의를 독촉하고 방치하다가 '06.1.26.에서야 수용재결 신청을 함에따라 환지확정측량 변경계약 ('06.3.30.한)에도 불구하고 변경기간내에 현실적으로 과업완료가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여 필요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① 위 용역수행자(○○기술단)는 지적부서의 검사신청 이전에 발주청에 검토요청조차하지 않고 '05.9.26.지적부서에 직접 검사요청을한 결과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인 도로폭확보(센터조정) 등 11개 항목(별첨)에 대하여 '05.10.10.보완통지를 받았음에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측량에서 누락된 "구가옥 담장 저촉결과도 작성 누락"항목 1개만을 가지고 '05.10.17.발주처에 검토요청하자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의 검토요청 사항도 아니며 '05.9.21.이전에 과업수행자의 요청에의거 검토가 종료되었어야 할 환지예정지와의 일치성 검토 등을 이유로 납품기간 2일은 남겨두고 '05.10.28. 용역중지통보를 함에 따라감사일 현재 ('06.2.20)까지 지체상금 39,592,968원(140,152,100×113일×2.5/1000)상당을 면탈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② 또한 위와 같이 '05.10.28.용역중지 통보를 한 후에도 10여일이면 검토가 가능한 "환지예정지와의 일치성검토"를 검토대상 필지만을 발췌한 후 현재까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
- ③ 계약대상자(○○○, ○○○)가 지적측량업을 '06.1.9.법인인(주)○○○기술단으로 양도(법인전환)하고 '06.1.17.발주처에 지적측량업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당초계약당시 제출한 ○○○○○○ 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제310-022-200500005575호)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지위 승계를 받은 법인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1.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시고 지위승계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지 위 승계를 받은 법인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 받도록 하 시기 바라며,
- 2. 검사결과의 시정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납품기한 2일을 남겨두고 발주부서에서 용역 중지를 통보함에 따라 용역수행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례가 발생 하였는 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2004년도 명시이월예산(시설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 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원칙상 명시이월된 목적대로 집행되 어야 하므로 세목변경, 사업비 변경은 불가능 함에도 남동구 교통과에서는 간석1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공사 외 1건의 명시이월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구월3동 ○○번지 공 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자 명시이월된 간석1동 901-4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시설비 잔액 243,089천원(예상)중 230,000천원을 산출근거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인천광역시 교통 관리과로부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산출근거)변경 승인 (2005.10.12, 시 교통관리과-10041)을 득하여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 행하였으나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변경이 불가능 함에도 구월3동 ○○번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명시이월금액 348,730천원보다 208,490천원(2005.12.31.현재)을 초과한 557,220천 원으로 예산집행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연찬과 함께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 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부신청시에는 재 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동시 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 금을 체납한 때에는 구청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받은 자 등에게 그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불 입치 않을 때에는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기타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남동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총 58건 196,233천원의 연체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8건 22,852천원에 대한 채권확보(자동차 압류) 조치만 하고 잔여 50건 173,381천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989년도 융자금 ○○○ 외 9건 23,500천원은 채권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완성됨에 따라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등 융자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관련 규정에 의거 체납된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 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체납자 현황

(2006.2.20. 현재)

연번	융자연도	이름	연체금액 (원)	비 고
1	1989	000	2,000,000	
2	1989	000	3,000,000	
3	1990	000	3,000,000	
4	1990	000	3,000,000	
5	1990	000	500,000	
6	1994	000	1,750,000	
7	1994	000	1,000,000	
8	1986	000	469,750	2005.8.9. 자동차 압류
9	1987	000	251,950	
10	1989	000	3,156,320	
11	1989	000	1,745,480	
12	1990	000	2,388,960	
13	1991	000	1,880,570	
14	1991	000	845,400	
15	1991	000	2,943,380	2005.9.5. 자동차 압류
16	1991	000	570,270	
17	1991	000	1,739,690	2005.8.9. 자동차 압류
18	1992	000	3,372,870	
19	1992	000	703,010	2005.9.5. 자동차 압류
20	1992	000	991,160	
21	1992	000	4,158,300	
22	1993	000	2,883,550	
23	1993	000	4,208,650	
24	1993	000	3,411,190	2005.9.5. 자동차 압류
25	1993	000	2,477,780	
26	1993	000	1,163,095	
27	1993	000	7,164,830	
28	1993	000	947,050	

29	1993	000	6,660,430	
30	1993	000	710,610	2005.9.5. 자동차 압류
31	1993	000	2,574,590	
32	1993	000	7,890,220	
33	1993	000	6,311,700	
34	1993	000	7,165,520	2005.9.5. 자동차 압류
35	1994	000	6,746,820	
36	1994	000	3,594,740	
37	1994	000	7,164,780	
38	1994	000	5,958,930	
39	1994	000	3,185,580	
40	1994	000	7,889,200	
41	1994	000	836,700	
42	1994	000	7,889,060	
43	1995	000	461,240	
44	1995	000	6,878,690	
45	1995	000	2,759,290	
46	1995	000	1,196,820	
47	1995	000	167,850	
48	1995	000	2,061,580	
49	1995	000	5,709,295	2005.9.5. 자동차 압류
50	1998	000	6,269,480	
51	2001	000	7,506,390	
52	2000	000	7,823,240	
53	2000	000	8,275,110	
54	2000	000	1,704,250	
55	2001	000	852,090	
56	2000	000	6,567,440	
57	2001	000	1,404,590	
58	2001	000	284,210	
계			196,223,700	

[일련번호: 1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이차보전금 지출 행위 부적 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지급명령의 종류는 통상 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이 있으며, 통상지급명령 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발하고, 송금(계좌)지급 명령은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할 때, 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은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할 때 발하며, 인천광역시남 동구재무회계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에도

남동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 ·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차 보전금을 지출함에 있어 각 기금출납원은 지급대상인 채주(융자은 행)를 수령자로 하는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지급명 령에 의하지 않고 협조공문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지급대상인 채주에게 자금을 지출시 지방재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지급명령 방법에 의거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영재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42,630천원(추정)

[신분상 조치]

[제 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부과 [위법부당내용]

○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

(단위 :천 원)

무단점유필지	무단점유면적	변상금액(추정금액)	비교
10필지	7,613.4 m²	42,630	변상금액은 향후세부조사 및 측량 후 확정금액 산정이 필요함

※ 국·공유지 무단점유 세부내역 "별첨"

-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 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

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87조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있다.

○ 남동구 경영재정과에서는 2004 ~ 2005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샘플 확인한 결과, 2필지는 붙임 무단점유 현황과 같이 대부면적보다 과다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8필지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등 총 7,613.4㎡ 변상금(추정 금액: 향후 정밀조사 및 측량이 필요함)42,360 천원 상당을 미부과 하고 방치하는 등 국・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 분 요 구]

○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에는 실태조사를 철저 히 하시기 바라며 대부면적보다 과다하게 점유한 토지에 대 하여는 정확한 측량등을 통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중요공유재산 취득시 지방의회 의결 미이행 등 [위법부당내용]

○ 지방의회 미의결 현황

(단위:처

원)

구 분	지 번	지적(m²)	취득가격	비고
계		893.54	1,202,785	
만월종합사회	만수동○○○-○○	670.5	377,620	
복지관증・개축공사		070.5	377,020	
구월시장문화	701500000	222.04	99E 16E	
화장실설치공사	구월동○○○○-○	223.04	825,165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하는 것으로서(취득의 경우 건물의 신·증축 포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시·군·자치구는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

항 제10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향후에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 취득시 지 방의회 의결 등 관련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영재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공유재산 관리환(이관)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 관리환미실시 현황

(단위:m²)

계	국유지	구유지	비	고
36필지(8,858.5)	29필지(7,850)	7필지(1008.5)		

※관리화 미실시 내역 별첨

- 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 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당해 재산을 이관하는 관리청은 이관받는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관리환 하기 로 결정한 문서를 교부하고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이관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남동구 경영재정과에서는 상기 현황에서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등

으로 공공시설이 된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대하여 관리환 내지는 이관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이행 하여, 도로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잡종재산 관리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향후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 사업 등에 따른 관리환 및 이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도시계획사업토지 공부정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도시계획 사업후 공부이정리 토지현황

(단위:m²)

소재지	지목(현실)	면적	도시계획사업	준공년도
장수동 000-0	구거(도로)	275	42번국도 확장공사	1990년이전
장수동 000-0	구거(수도)	513	남동정수장건설공사	1992
수산동000-00	하천(도로)	1,134	소래선확장공사	2003

- 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 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당해 재산을 이관하는 관리청은 이관받는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관리환 하기 로 결정한 문서를 교부하고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이관하여야 하다
-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남동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기 현황에서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공공시설이 된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환 내지는 이관을 하여 공부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이행 하여, 도로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농림부 소관국유지 관리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한바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된 토 지에 대하여는 공부정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도시정비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남동국민체육센터 청사신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소재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실내	골프연습정	가관 련	비고
エハハ	\ \ \ \ \ \ \ \ \ \ \ \ \ \ \ \ \ \ \	기비기간	시 표 에	당초	변경	사업비	1 1 1 1
			- 체육센터1동(5,125m²)		실내골프 연습장	975	
만수동00 9,140		'04.3.8 ~'06.3.30	- 주차장 58대	게이트			·0=1.00
	9,140		- 수영장	게이크 볼장			(051.23 사업변경
		00.5.50	- 헬스장,에어로빅장	宣78	인 급 경		기급간장
		- 다목적체육관					

○ 2003.11.17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받고 2004.2.4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남동구 민체육센터)설치사업을 2004.3.8 착공하여 2006.3.30 준공 예정으로 9,140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125.89㎡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 2005.1.21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수영장 상부 게이트볼장 변경 계획(안)」【건축과 - 925】에 따르면 수영장 상부 게이트볼장 증축할 시 수영장 상부의 철골트러스 구조로는 하중에 의한 구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소음발생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게이트볼장을 실내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내골프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필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없이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업비 835백만원을 증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2005.2.17 위 변경계획(안)에 따라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설계용역」을 25,630천원에 발주하여 2005.8.18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6.24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업 주관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975백만원이 증가된 9,140백만원의 계속비 변경 조서를 작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2005.9.23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골프연습장 증축에 따른 검토 보고」【건축과-15290】에 따르면 신축중인 남동국민체육센터의다용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골프연습장 증축방침 및 예산이 결정됨에따라 발주방법을 설계변경의 방법으로 결정한바 있으며,2005.10.18 상정된 도시계획시설조성 계획변경 사항을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실내골프연습장 대신 친환경적인 시설변경 검토와 공원기능을 최대한 유지할수 있는 타시설 도입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으며, 2005.12.2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변경계획을 전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사유에 대한 보완 및 검토 없이 재상정 하였으나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경위 및 주민여론 조사 결과 등 보완하라는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게이트 볼장을 실내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변경전 공원의 기능, 사업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추진하

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사업변경을 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한 사업을 설계용역 발주 및 계속비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변경사업 추진을 위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2회에 걸쳐 상정하였으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에 적정한고 종합적인 검토없이 결정함으로서 보류되었음은 물론 보류 사유에 대한 적정한 보완없이 재상정함으로서 보류되어 사업변경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함으로서 현재까지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치못함으로서 사업준공 시기가 2006. 3. 30인 시점을 감안하여 사업결정이 포기될 경우 설계용역비 25,630천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계속비에 반영된 975,000천여원의 예산이 사장될것으로 예상되는 등 업무추진을 부적정하게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 향후에는 도시계획업무 추진시 적정하고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이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불용물품 처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구)지방재정법(법률 제7159호)」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2년 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서 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단, 재활용이 가능한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에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을 결정하고, 불용품매각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에서는 2004. 5.19. 「2004년 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재물조사 결과 불용품이 발생할 때에는 소요조회를 한 후 불용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불용결정을 받아 불용처분에 필요한 감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2004.10.31.까지 재물조정 및 불용품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에서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출」(자치행정과-10384 2004. 7.28.))에서 2,194점, 1,419,999천 원 상당의 불용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용결정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2005. 6. 1.에서야 2,094점 992,287천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 불용결정 후 불용품 매각을 각 기관별로 추진하면서 본청분전동식윤전등사기 외 22종 157점을 780,000원에 매각처분하고 229점 30,791천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2006. 2.24.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에서는 불용결정후 처분되지 않고 있는 229점 30,791천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상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14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건설교통부훈령 제2000-270호) 제8조는 공사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현장실정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 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는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 건의 표시,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평가서 제출기한 등을 기재하여 감정 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의뢰하여야 한다.

남동구 건설과에서는 인천대공원 ~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에 대하여 '04. 3. 12 실시설계용역 착공을 하여 '04. 5. 29 실시설계용역 준공 검사 완료 보고서에 지장물이 누락된 상태로 보상업무를 추진하였음.

'04. 10. 19부터 공사를 실시하면서 '05. 6. 27 ○○개발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지장물 이설 및 협조 요청 건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고서 설계용역 보고서에 누락되었던 영업간판 등 16개 지장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검토하여 보상대상 물건인지를 확인하였어나 하나 이를 검토하지도 않고 '05. 8. 18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공공사업 편입물건 감정평

가를 의뢰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 진하였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보상업무 추진 시 누락 물건 등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보상액 산정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32,812천원
[제 목]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84조의3 제3항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5배 중과세(세율 : 취득세 일반세율인 2%의 5배인 10%)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 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00누0000선고, 1994.2.8)으로, 관계법령에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부속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제

123호,2004.9.23).

따라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이 2002.11.12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은 198.31 ㎡, 취득당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34,250,686원으로서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하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할 경우 동 주택의 부속토지는 총 968㎡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인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동정태가 2003.12.23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연면적은 198.26㎡이고, 취득당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29,726,760원이며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하고 잔디를 심어 주택의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할 경우 동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총 2,000㎡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요건에 각각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관련 취득세 30,057천원, 농어촌특별세 2,755천원, 합계 32,812천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32,812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25,953천원

[제 목]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등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96조의8제2항에 의하면 비과세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자동차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의 명의로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등이 감면된 인천00도0000 등 94건의 경우,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대상 공동명의자간세대분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감면대상 차량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세대분가 및 매각으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함에도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동차세 15,112천원, 지방교육세 4,484천원, 취득세 2,067천원,

등록세 4,290천원, 합계 25,953천원을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 이 있음

- 1. 부과누락된 자동차세 등 25,953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0,853천원
 [제 목]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 및 제250조 규정에 의하면 매년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0000 (주)○○ ○○ 외 38개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10,853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 1. 부과누락된 사업소세 10,853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9,904천원

[제 목]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인천. 남동구 고잔동 ○○○-○ ○○○외 6인에 대한 취득세 9,111천원, 농어촌특별세 793천원, 합계 9,904천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9,904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3,813천원
 [제 목]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당해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1항 및 동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 등을 파악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 주민세 균등할 과세기준일(매년 8.1.) 현재 ○○건설외 49개 법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서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3,050천원, 지방교육세 763천원, 합계 3,813천원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 부과누락된 주민세 등 3,813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5,245천원

[제 목] 산업단지내 공장 및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등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등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 규정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인천 남동구 고잔동 ㅇㅇㅇ-ㅇ ㅇㅇㅇ외 9인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 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 감면 된 취득세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 ○○○외 1인의 경우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 여 당초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고,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 관련 취득세 3,714천원, 등록세 1,294천원, 지방교육세 237천원, 합계 5,245천원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5,245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339,162천원

[제 목]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 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 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 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 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하여는 당해 등록 세를 3배 중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에는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의하면「유통산 업발전법 | 에 의한 유통산업을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는 한편,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 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 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물산(주)의 경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2003.10.15자로 자동차 판매업 영위를 목적으

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6.30 및 2003.12.8 인천 남동구 구월동 ○○○외 5필지의 토지 1,543㎡를 취득 등기하고 2004.10.18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등기한 후 동 건물을 자동차판매용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4.11.9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을 한 후 동 건물 지하1층 468.19㎡을 자동차 정비·수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정비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하1층 468.19㎡부분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이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사단법인 인천광역시〇〇회의 경우, 2001.12.28자로 신설된 법인으로서 2002.11.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〇〇〇〇〇〇 토지 580.2㎡를 취득 등기한 후, 2003.2.28 동 지상에 건물 3,100.72㎡를 신축 등기한 후 6, 7층 건물 724.08㎡을 인천광역시 새마을 회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제27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건물 2,376.64㎡)은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대도시내 신설법인이 5년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서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의 경우, 2000.10.18 신설된 법인으로서 2002.9.4. 남동구 구월동 ○○○○의 3필지 지상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2003.1.1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득한 후, 2003.6.30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의 3 필지 2,747.26㎡를 취득・등기하였으나 토지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내에 유통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 토지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 위 ○○물산(주)외 2개 법인에 대하여

관련 등록세 286,616천원, 지방교육세 52,546천원, 합계 339,162 천원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 중과세 누락된 등록세 등 339,162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279,376천원

[제 목]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등 비과세 적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 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날,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제11조 제8항 제4호에 의하면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지 정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 첨부하여 제출하 는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등으로 각각 규정하 고 있음.

한편,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국가 등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95 다20581선고, 1996.11.8)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서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 현재 국가 등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무상귀속 결정 또는 기부채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 13407-1107,2000.9.15)임.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 2004.12.27자로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소래·논현 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번지 (주)○○외 1인(○○○○○)이 2005.9.4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후 인천 남동구 고잔동 ○○ 토지 538.75㎡외 14필지를 2005.10.20부터 2006.1.17까지 각각 취득하였는 바, 동 토지가『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소래·논현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42호, 2004.12.27)』된 내용상 공원, 도로 등 기부채납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규정 등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등을 각각 비과세 처리하였음.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자(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으로 「기부채납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대상지를 "결정"고시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실시계획 인가일"이전에는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에 대한 지정권자(시·도지사)의최종 승인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본 건 "소래·논현 도시개발 구역"의 경우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도시개발구역사업시행자인 (주)○○외 1인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본 건「소래·논현 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의 "기부채납 대상지 결정 고시"가 있기 이전 단계인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만 수립·고시된 상태에서 위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주)○○외 1인이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현재 국가 등으로부터 당해 토지의 무상귀속 결정 또는 기부채납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취득세 121,468천원, 농어촌특별세 12,147천원, 등록세 121,468천원, 지방교육세 24,293천원, 합계 279,376천원을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있음.

- 1. 관련 취득세 등 279,376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과세·감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2,134천원
[제 목] 재산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조례」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등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86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부동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천 남동구 논현동 ○○○-○○ ○○산업(주)의 경우 동소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운영중에 있으나 A동의 경우 동건물의 취득일이 1991.1.26이고 동건물 부속토지의취득일이 1992.10.2로서 그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세감면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경감대상이 아닌 일반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천 남동구 고잔동 ○○○-○○ (주)○○○ 외 7인의 경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 감면된 재산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학교법인 ○○학원의 경우, 인천 남동구 간석동 ○○-○ 번지에서 기존에 운영하여 오던 ○○○대학 캠퍼스를 2004.6.30자로 신축된 인천 연수구 연수동 신 캠퍼스로 이 전하여 2004년도 제2학기부터는 연수동 캠퍼스에서 학사운 영을 하고 있는 바, 2004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종전의 ○○○대학 캠퍼스는 공가 상태로 비워진 상태로 있으므로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남동구청 세무과에서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대한 관련 법규 적용 착오 및 사실관계 확인 소홀로 건물분 재산세 7,948천원, 건물분 지방교육세 1,010천원, 토지분 재산세 2,588천원, 토지분 지방교육세 588천원 ,합계 12,134천원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한사실이 있음.

- 1. 부과누락된 재산세 등 12,134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 치·운영하여야 하고, 경기대회개최 또는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여야 하고 개 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 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 담시킬 수 있다. 또한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

남동구 문화홍보실에서는 ○○테니스장, ○○정, ○○정이 공공체육 시설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다음과 같이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

○○테니스장은 관리위탁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역주민이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 개방시간·이용방법 안내게시판과 위탁관리시설임을 알리는 표찰이 없어 특정 테니스회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테니스장 주변의 환경상태 또한 청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정과 ○○정 역시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없고, 위탁관리 계약 의무로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2005년 정에서 총 3기 737명에 대한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운영하였고 국궁장(○○정, ○○정)의 경우 일반주민들이 다수 이용한 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를 하지 않아 국궁장이 특정인들에게만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가 없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 ○○테니스장의 경우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 안내표지판을설치하고 주변 환경상태를 정비토록 하고
- 2. 국궁장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기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탁관리 시 시설물에 대한 명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하시기 바람.

[일련번호: 3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유재산 관련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 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산관리관(문화홍보실장)은 구유재산을 신축 완공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 문화홍보실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인 ○○정(국궁장)과 ○○정(국궁장)을 '03. 12월~'04. 9월까지 총 1,077,564천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여 준공한 후 '04. 12월 2단체에게 2년 기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관련 공유재산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도면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소홀히 하고 있음.

[처 분 요 구]

1.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등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 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노래연습장 등 단속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39조는 구청장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한 때에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남동구 문화홍보실에서는 게임장, 노래연습장업 등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면서 경찰유선통보 적발 업소 및 무등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

- '04년부터 '06년 기간 동안 남동구에서는 총64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04. 3월에 접수된 PC방 등 총 71건에 대하여 경찰서 서면통보미접수를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미처분 상태이며, ○○○○노래연습장(구월동 ○○○○-○, ○○○)의 경우 '04. 5. 24일 접대부알선으로 전화접수 받은 후 '05. 4. 27일 2차 접대부알선, '05. 7. 26일 3차 접대부알선, '05. 8. 10일 4차 주류판매 전화통보를 받았으나 미처분 상태, ○○○노래연습장(간석동 ○○○-○○, ○○○)도 '05. 3. 22일 1차 주류판매, '05. 5. 2일 2차 접대부알선, '05. 11. 25일 주류반입묵인 통보를받았지만 미처분 상태이며
 - '04년의 경우 미통보 건에 대한 문서로는 조회를 하지 않고 유선으

로만 수시 확인하였으며 '05년 3회, '06. 2. 8자로 공문회신 요청하였다.

- 무등록업소인 ○○○(만수동 ○○-○○)에 대해서 경찰서 통보 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였고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소 및 3회 적발된 1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서 미회신을 이유로 미처분 상태이다

위와 같이 문화홍보실에서는 '04년부터 총 32회의 유해업소 단속을 실 시하여 4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노래연습장 등 상습 영업 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및 상습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 고 있다.

- 1. 노래연습장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경찰서 서면 미통보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2. 노래연습장 등 상습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및 상습 무등록 영업소에 대한 관리 및 단속 등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감정평가 관련 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법 시행령 제28조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동구 건설과에서는 운연동 ○○○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보상업무 추진을 하면서 '05. 8. 4 보상계획 열람통지 및 감정평가업자선정 안내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의뢰하였으며 '05년 8월 22일 ○○○ 등 7명이 (주)○○○감정평가법인(○○지사)으로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기관으로 추천하였으나 토지면적의 2

분의1인 719.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인 8명이 되지 않음에도 '05. 9. 12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제일 감정평가법인과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감정평가법인 등 2개 업체에게만 감정평가업자선정을 하는 등 부적정하게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손실보상업무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 추진 시 관련법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명)

[제 목] 비밀문서 공유 및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거 분류된 비밀문서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관한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및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5조(개인용컴퓨터 보안관리), 제29조(단말기 보호)에 의거 개인용컴퓨터를 전산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2005년 보안업무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정보화담당관(기획감사실장)은, 최근 공직자들의 보안의식 결여로 인하여 전 직원의 보안 중요성 자각 및인식형성을 위한 인터넷시대의 PC 보안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보보안대책을 전파하였으나,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문서를 개인용컴퓨터

에 무단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과에 근무하는 ○○○은 개인정보자료 및 지방세 과세자료를 개인PC에 무단방치 하였고,

그 외 청소과 ○○○ 외 20명은 개인PC에 개인정보자료 등 붙임자료와 같이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 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단말기(개 인용컴퓨터) 취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개인용컴퓨터에 대하 여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열 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10분 이상 단말기의 작업중단시 화면보호조 치를 설정하기 바라며, 부득이 자료(파일, 디렉토리) 공유시 비밀번호 부여조치를 하여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2.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거 분류된 비밀자료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기 바람.

[일련번호 : 4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총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사다면평가시스템 구입설계 및 검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16조2항, 제18조, 소프트웨어산업진홍법 제20조3항 및 회계예규 제20조(검사), 21조(인수)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다면평가시스템을 구매 용역을 함에 있어,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다수 업체에서 개발한 인사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하여 사전 기술심사를 실시함에 2-3개 업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만으로 특정업체의 제품(HReMES)을 선정하였고, 동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인사다면평가프로그램과 운용서버를 함께 구입 및 설치하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도입되는 시스템의 세부내역 없이 '물품매입 품의및 요구서'에 다면평가시스템도입시방서를 첨부하여 동 프로그램및 서버의 사양 등을 임의도입 할 수 있도록 2004.7.21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7월30일에 납품 및 검수하였음

또한,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다면평가시스템도입시방서상의 구축 내용 검사실시와 산출물을 확인하고 계약서 및 용역계획서를 기 준으로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 야 하나, 동 계약서상의 산출물(용역계획서, 착수계 등)을 제출받 지 아니하는 등본 시스템의 용역사업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태로 물품검수를 한 사실이 있음.

- 1.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정보화시스템(프로그램 포함) 개발·구축 용역시 도입되는 시스템의 H/W 제품사양과 S/W 개발(구축)범위 에 대한 세부내역을 과업요구(지시)서에 명시하기 바람.
- 2. 또한,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과업요구서(도입시방서)를 기준으로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하고, 향후 정보화시스템을 도입(구매 등)시 관련 기기(시스템)의 시장조사 등 동향파악을 성실히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신의장비 및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및 S/W 중복개발 검토 등을 정보화 담당부서와 협의 · 조정하여추진하기 바람.

[일련번호 : 4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유지보수 계약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 [위법부당내용]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에서 도입·운영 중에 있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계약체결업체인 (주) ○○○○○과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2004.1.1~12.31)함에 있어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프로그램의 총 개발비 22,000천원(각 11,000천원)의 15%이하인 3,300천원(월275천원)이하로 유지보수비를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기능향상 및 재개발 비용"의 명목으로 두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관계없는 추가비용을 과다산정(2,550천원× 2=5,100천원)하여 계약업체인 (주)○○○○의 견적인 7,200천원(월600천원)으로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용역유지보수대가를 초과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음.

또한, 2004. 5월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선 PDA 단속 자료를 불법 주정차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 입하면서 지난 유지보수기간(2004.1월~4월)의 불성한 유지보수서비스와 무선PDA단속자료연계프로그램개발용역 후 무상유지보수를 이유로 2004년 5월부터 유지보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며,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불법주정차관리 및 버스전용차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료에 대하여 2005년 2월 15일 프로그램 교체구입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을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의 잔액인 4,800천원(8개월분)을 감액하여 유지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 남동구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보화부서인 기획 감사실(정보관리팀)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료 산출근거 마련과 동 프로그램 및 시스템(서버)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 유지보수 계약관련 계약업체로부터 월1회 이상 예방점검 실시와 점검표 작성,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동 프로그 램 버전 변경시 신속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바람.
- 3. 향후, 정보화시스템을 구축(도입·연계 등)시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차량 및 도로교통시스템)과의 연계 및 S/W 중 복개발 검토 등을 정보화담당부서와 협의 · 조정후 구축 계 획을 수립하여 시스템을 도입하기 바람.

[일련번호: 4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ㆍ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획감사실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전산장비 및 관련 S/W도입에 따른 운영 소홀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 제18조 및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2004.10)에 의하면 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운영을 위한 각종 계획서, 오류보고서, 변경 요구서 등을 포함하여 운 영과 관련이 있는 모든 구성 및 변경 항목의 기록을 관리, 유 지 할 의무가 있고, 운영자의 관리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작 성·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획감사실에서는 2004년 4월 및 2005년 7월 도입한 네트워크바이러스 차단장비와 웹로그분석기를 운영함에 있어 장비 및 소프크웨어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분석 등에 대한 기록(문서작성 등)을 소홀히 한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보화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및 관련부대장비의 원활한 운영이 전자정부구현에 중요한 업무임을 감안하여, 바이러스 및 비인가자로부터 전산자료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바이러스 차단시스템과 방화벽시스템에 대하여 연계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하고, 홈페이지의 방문 및 정보수요에 대한 웹 로그분석기의 효율적인 운영·분석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일련번호 : 4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ㆍ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획감사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S/W 중복도입 심의 미이행 및 영상민원시스템 운용 소홀

[위법부당내용]

전자정부법 제1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제5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제56조(정보화시스템의 확산보급) 및 자치단체 S/W 개발관련 중복개발방지 및 공동활용지침(행정자치부, 2001.9)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S/W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토록 되어있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행정자치부, 2004.10)에 의하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가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대체하도록 조취를 취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2004년 구축하여 활용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의 고도화를 위하여 ' 광통신망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가통신망의 장비 및 선로점검 소프트웨어(NMS)가 행정자치부에서 2004. 3월 보급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중인 통합정보관리시스템 (SMS)과 중복도입관련 협의조정·심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광통신망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또한, 2003.10월 원격무인방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동 시스템중 원격민원상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구청⇔동사무소간 원격으로 구청담당자와 민원인이 영상대화를 통한 일상민원을 상담토록 하였으나, 2006.2.23일 현장 점검(만수6동)시 동사무소의 KIOSK에서 민원상담을 위한 구청담당자연결요청에 기획감사실 외 16개부서중 3개부서(청소과,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의 구청담당자만이 연결되었으며, 일부부서는 화상연결 및 장비의 이전이 안된 상태로 운영하는 등 원격민원상담시스템 운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1. 향후 정보화시스템(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의 소프트웨어 중보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과 행정자치부의 S/W 개발관련 중복개발방지 및 공동활용지침에 의거정보화부서(시청 정보화담당관실 등)와 협의·조정하여 시스템(프로그램)을 도입하기 바람.
- 2. 또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원격으로 구청의 담당자와 영상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원격민원상담시스템의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청 담당자 교육 및 세부 활성 화계획 수립 등 운용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NO. 45

監查結果處分要求書

Kr.	ArA:	 按行欠度 欠我 ## ##		財政」	財政上措置		
所	管	施行年度	行政上措置 	措置方法	金	額	置
	구청 통보실	2006	시정	_			훈계
		청소년	보호법 위빈	과징금 분	분할납	부신	청 민
題	目	원처리	소홀 및 민	<mark>!</mark> 원사무편림	남 수록	록 조:	치미
		이행					

1. 현 황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현황 : 붙임 참조

2. 위법부당내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 제2항에서 민원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접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4년 2월부터 2005년10월까지 과징금분할납부를 신청한 민원 25건의 민원서에 대하여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반문서로 조차 접수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가 사장되는 등 민원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과징금분할 납부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비치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남동구민원사 무편람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 관계법령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민원사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장에게 민원사무편람의 개정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과징금분할납부신청에 대한 법령(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이 2001년 8월30일 신설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남동구민원사무편람의 개정을 추진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 또한, 남동구 자체 민원사무편람 정비계획시(2004년 5월, 2005년 9월) "과징금분할 납부신청"에 대해 민원사무편람을 수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민원사무편람 변동사항(신규, 수정, 폐지)자료 제출시「과징금분할납부신청」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민원사무편람목록을 민원지적과로 통보하는 등민원사무편람 정비 사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처분요구

○ 조속히 남동구 민원사무편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분할납부신 청에 대한 내용을 수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과징금분할납부 신청서를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여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고 관 련자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현황

【2004년도】

일련 번호	업 소 명	업 주 명	분할신청일자	분할승인일자	분할납부 사유	비고
1	○○슈퍼	000	2004.02.03	2004.02.03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슈퍼 규모와 수입이 적어 분할납부 신청	
2	○○슈퍼	000	2004.02.05	2004.02.05	보증금 2천만원에 월40만원의 영세 한 기게를 운영하는 63세의 연세로 분할납부 신청	
3	○○슈퍼	000	2004.02.17	2004.02.17	집가 가게가 모두 월세이고 남편도 직업이 없어 분할납부 신청	
4	○○슈퍼	000	2004.03.10	2004.03.10	슈퍼하나의 수입으로 주택 가게의 전월세를 납부하고 자녀들도 수입 이 없는 상태로 분납신청	
_	0000				집과 기게 구입을 위해 생긴 채무 가 5억3천3백만원으로 매월3백만원	
5	○ 편의점	000	2004.03.19	2004.03.19	의 이자를 납부하여야하는등 어려 움이 있어 신청	
6		000	2004.04.07	2004.04.07	육순의 연세로 혼자운영하며 기계 와 집 모두 무허가 건물이며 각종 세금도 체납된 상태	
7	○ ○ ○ 슈퍼	000	2004.05.25	2004.05.25	경기불황 및 대형마트로 인한 영업 부진과 학비 및 생활비납부등의어 려움으로	
8		000	2004.06.04	2004.06.04	경기불황 및 대형미트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대출금이자등이 있어 일 시납부에 어려움이 있음	
9	○ ○ ○ 슈퍼	000	2004.06.28	2004.06.28	영업부진으로 기게문을 닫은 상태로 일시납부의 려움이 있음	
10		000	2004.09.20	2004.09.20	경기불황 및 대형마트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분납	
11	ㅇㅇ마트	000	2004.10.01	2004.10.01	집과 기게월세 90만원으로 과징금 일부납은 부담이 됨	
12	○ ○ 슈퍼	000	2004.10.07	2004.10.07	노부부의 영세상인으로 급성심근경 색증의 약갑 부담등이 커 분할납부	
13	○ ○ 할인 마트	000	2004.10.12	2004.10.15	영업부진 및 기게와 집월세 납부의 부담이 커 분납신청	
14	○ ○ 마트	000	2004.10.19	2004.10.20	영업부진 및 남편실직으로 인해 일 시납부가 어려움	
15	○ ○ ○ ○편의점	000	2004.11.09	2004.11.09	영업부진 및 융자금 납부등으로 인 해 일시납부에 어려움이 있음	
16	○○마트	000	2004.11.12	2004.11.12	수입이 적어 일시에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005년도】

일련 번호	업 소 명	업 주 명	분할신청일자	분할승인일자	분할납부 사유	비고
1	○ ○ 마트(편의 점)	000	2005.01.03	2005.01.03	월수입 150만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분납신청	
2	○ ○ 슈퍼	000	2005.02.03	2005.02.04	월수입이 적어 일시납에 어 려움이 있어 분납신청	
3	○○식품	000	2005.02.07	2005.02.07	소규모 영세상인으로 노인 분들의 일시납부의 어려움 이 있다고 보아 분납신청	
4	○ ○ 슈퍼	000	2005.06.20	2005.06.20	소규모 영세상인으로 기게 수입이 적어 일시에 납부가 어려워 분납신청	
5	○ ○ 슈퍼	000	2005.08.01	2005.08.02	가게 수입이 너무적은 영 세상인으로 분납신청	
6	○ ○ ○ ○ 편의 점	000	2005.09.20	2005.09.20	영업부진과 대출금변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분납신청	
7	○○○마트	000	2005.09.26	205.09.26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 자 납부의 부담이 커 분납 신청	
8	○ ○ 슈퍼	000	2005.09.26	2005.09.26	소규모의 영세상인으로 월 세 납부등 어려움이 있어 분납신청	
9	○ ○ 슈퍼	000	2005.10.24	2005.10.24	가게의 월세가 월70만원으 로 부담이 커 분납 신청	
10						
11						
12						
13						
14						
15						
16						
17						
18						

710	4.0	斯 <u></u>	的 未外用 よ 八					
NO.	46	監査結果處分要求書						
所	管	旅行年度	行政上措置	財政」	上措置	身分上措置		
ולל	官	旭1] 十戌	1 以上拍し	措置方法	金 額	才刀工拍直		
남동	구청	2006	시정	환수	3,840천원	· 후계		
사회	복지과	2000	710	지급	222천원	문계		
目音	ы	사망기	가에 대한	노인교통수	-당 지급	부적정 및		
題	目	환수	조치 소홀					

1. 현 황

- 노인교통수당 수급권 상실기준 부적정으로 인한 환수대상 현황 : 붙임1
- 사망 또는 사망신고이후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현황 : 붙임2
- 노인교통수당 추가지급 대상자 현황 : 붙임3
- 사망으로 인한 노인교통수당 환수대상자 현황 : 붙임4

2. 위법부당내용

가. 노인교통수당 수급권 상실기준 부적정으로 인한 부당지급

○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분기 첫달(1,4,7,10월) 20일에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이 보건복지부 지침(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질의응답 사례집, 2004. 5)에 의하면 노인교통수당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상실(지급정지)기준은 '사망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4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구월1동 ○○○ 외 14명에 대해 수급권 상실기준을 사망일로 하지 않고 사망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612천원을 부당하게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사망 또는 사망신고이후 노인교통수당 부당지급

○ 인천광역시 노인교통수당 지침에 의거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하였다면 지급을 중지해야 함에도 2004년 4월부터 2005년10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간석3동 ○

○ ○ 외 3명에 대해 사망일 또는 사망신고일 이후에 216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업무 소홀

○ 인천광역시 노인교통수당 지침에 의하면 노인교통수당은 수급자의 사망 일을 기준으로 지급을 중지해야 함에도

2004. 4월부터 2005년10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간석1동 ○ ○ ○ 외 4명에 대해 수급권 상실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222천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라.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환수조치 소홀

○ 인천광역시 노인교통수당 지침에 의거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하였다면 지급을 중지하고, 사망일을 기준으 로 매분기 첫달 19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 지급한 노인교통 수당을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구월1동 ○ ○ 의 81명은 매분기 첫달 19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3,012천원을 환수해야 함에도 서면으로 환수요청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환수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처분요구

○ 수급자 4명에 대해 미지급된 노인교통수당 222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3,840천원을 회수 조치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인교통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1

노인교통수당 수급권 상실 기준 부적정으로 인한 환수대상 현황

(사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

주 소	성 명	사망일시	사망신고일자	환수대상분기	부당지급액 (천원)
 구월1동	000	05. 6.29	05. 7.11	05. 3/4	(신권)
구월4동	000	04. 3.25	04. 4. 6	04. 2/4	36
	000	04. 6.26	04. 7. 5	04. 3/4	36
	000	05. 6.24	05. 7.22	05. 3/4	36
간석1동	000	04.12.21	05. 1.29	05. 1/4	36
간석3동	000	05. 9.29	05.10.4	05. 4/4	36
	000	05. 4.30	05. 7.18	05. 3/4	36
만수1동	000	05. 9.28	05.10.20	05. 4/4	36
만수3동	000	03.12.18	04. 9. 2	04.1/4~3/4	108
	000	04.12.25	05. 1.21	05. 1/4	36
	000	04.12.23	05. 1.21	05. 1/4	36
만수4동	000	05. 3.20	05. 4.11	05. 2/4	36
만수5동	000	05. 6.10	05. 7. 5	05. 3/4	36
	000	04. 9.24	04.10.4	05. 4/4	36
	000	05. 6.23	05. 7. 1	05. 3/4	36
계	15명				612천원

붙임2

사망 또는 사망신고이후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현황

주 소	서대	사망일시	사망신고일자	お のエユルコ	부당지급액
구 소	성 명	사망들시	사당신고철사	작오지급까기	(천원)
간석3동	000	04. 4.18	05. 2.24	04. 2/4, 3/4	72
	000	05. 5.18	05. 6. 2	05. 3/4	36
만수2동	000	05. 7.16	06. 1. 2	05. 3/4, 4/4	72
만수6동	000	04. 4. 8	04.10.8	04. 3/4	36
계	4명				216천원

붙임3

노인교통수당 추가지급 대상자 현황

주 소	성 명	사망일시	사망신고일자	최종지급일	추가지급액(천원)
간석1동	000	04. 9.16	04. 9.21	04. 4.20	36
	000	04.12.21	04.12.6	04. 7.20	36
간석3동	000	04. 9.20	04. 9.30	04. 4.20	36
	000	05.4.26	05. 5.13	04.10.20	72
장수서창동	000	05.10.24	05.10.28	05. 7.20	42
계	5명				222천원

붙임4

사망으로 인한 노인교통수당 환수대상자 현황

(매분기 첫달 19일이전 사망자)

동 별	수급권 상실자수(명)	부당지급액(천원)
구월1동	4	150
구월2동	1	36
구월4동	16	600
간석1동	12	432
간석3동	21	768
만수1동	3	126
만수2동	2	72
만수3동	1	36
만수4동	1	36
만수5동	6	216
만수6동	8	288
장수서창동	5	180
남촌도림동	2	72
계	82명	3,012천원

NO. 47	監	監査結果處分要求書				
所 管	施行年度	行政上措置	財政」 措置方法	上措置金	額	身分上措置
남동구청 사회복지괴	남동구청 사회복지과 2006 시정 -					_
題目	題 目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소홀					

1. 현 황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황

궤	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1	사외국시합인	소계	종합복지관	장애인	노인			
16	1	15	3	7	5			

2. 위법부당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시설) 회계직원 임면 및 재정보증 미실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동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인 초도원의 경우 감사일현재까지 수입원, 지출원 등 회계관계 직원을 임면하지 않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인 초도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이 겸임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담당에 대하여는 회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0조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남동구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만수, 만월)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만월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경우 시설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 총괄책임자인 관장(센터장) 및 사무국장이 감사일 현재까지 재정보증 없이 회계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

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품 관리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4 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 이사 및 시설장이 후원금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기하여야 하고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노인복지시설인 초도노인요양원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5. 12.27 부터

2006. 1.31 기간 중 태평양복지재단 등으로부터 후원물품을 접수하고서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후원금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다. 사회복지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처리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보건복지부, 2004. 9)에 의거 2004년 3월25일부터 4월23일까지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만수장애인공동생활가정, 노숙자 쉼터, 쪽방상담소 등 3개 시설

에 대하여 「사회재활교사 급식비 미부담」,「회계처리절차 미흡」,「시설운영 미수립」등을 지적하고도 당해 시설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처분요구

○ 사회복지법인의 수입원 및 지출원 임면과 시설의 관장·사무국장이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시고, 후원금품 접수시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급토록 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4	18	監	監査結果處分要求書				
所	管	施行年度	行政上措置	財政上 措置方法	:措置 金	額	身分上措置
남동 ⁻ 사회복	. •	2006	2006 주의 -				
題	目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기관	후속	조치	지연

1. 현 황

○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편의시설의 종류	연번	기관명	편의시설의 종류
1	○○○파출소	대변기	9	인천○○교육청	유도 및 안내설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대변기, 점자블록	10	○○지구대	대변기, 점자블록, 접수대 및 작업대
3	인천〇〇〇	세면대, 유도 및 안내설비	11	○ ○ 소방소	대변기, 점자블록, 접수대 및 작업대
4	근로복지공단 ○○○○본부	점자블록	12	○ ○ ○ 파출소	높이차이제거
5	○ ○ ○ 치안센터	접수대 및 작업대	13	○ ○ ○ 우체국	대변기, 점자블록
6	○ ○ ○ 파출소	주차구역	14	○ ○ ○ ○ 파 출소	점자블록, 접수대 및 작업대
7	○ ○ ○ 선관위	대변기, 접수대 및 작업대	15	○○파출소	점자블록, 접수대 및 작업대
8	○ ○ ○ 파출소	점자블록, 접수대 및 작업대	16	○ ○ ○ ○ 파 출소	점자블록

2. 위법부당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개선 등 시정을명하고,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 인천시에서 2005.9.2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2005.10.20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조치를 강조하는 공문을 재 시달하였으 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미설치한 〇〇〇파출소 등 16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 명령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2005년 12월 자체 일제 실태조사시까 지

후속조치를 보류하다가 실태조사 완료시점인 2006. 2.17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사업예산이 2006년도 예산 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처분요구

○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기관에 대하여는 조기에 시정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NO. 49		監査結果處分要求書					監査者
							범
 所 管		施行年度	行政上措置	財政上措置			身分上措置
ולל	语	旭1] 十戌	1] 以上疳빝	措置方法	金	額	オガエ疳眞
	구청 록지과	2006	주의	-			-
題 目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지급 지연							

1. 현 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신청 현황

주 소	성명	출생신고일	해산급여 지급일	해산급여지급 지연일수
남동구 구월2동	000	2004.10.26	2004.11. 4	9일
남동구 만수1동	000	2005.10.9	2005.11.14	36일
남동구 만수2동	000	2005.10.26	2005.11.18	23일
남동구 간석3동	000	2005.10.25	2005.11.30	36일
남동구 만수동	000	2005.11.28	2005.12.19	21일

2. 위법부당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 업 업무지침에 의거 해산급여는 조산,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제3항에 따라 해 산급여의 신청은 출생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에도
-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해산 급여를 지급하면서 출생신고된 신기환 외 4명에 대해 별도의 해산급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함에 따라 9일~36일까지 수급자에 대한 해산급 여 지급을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처분요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규정 연찬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50		監査結果處分要求書					監査者		
								범	
所 管		施行年度	行政上措置	財政上措置				身分上措置	
				措置方法	金	額	オガエ疳眞		
남동구청 사회복지과		2006	주의	_				_	
題 目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후 조치 소홀									

1. 현 황

○ 보육시설별 지적사항 : 붙임 참조

2. 위법부당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거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 화재예방, 안전·위 생관리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보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 2004년 2월부터 9월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으뜸어린 이집 외 34개소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회계관련서류 미작성, 안전교육계획 미수립 등을 지적하고도 당해 보육시설에서 지적사항에 대 한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요구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미조치 보육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앞으로 지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육 시 설 별 지 적 사 항

	2.2.2		2-2-2-5				
연번	점검일	시설명	지적사항				
1	2004.2월	○○어린이집	소화기 점검 미실시 등 10건				
2	"	○○어린이집	소방계획 미작성 등 10건				
3	2004.4월	○○어린이집	비상연락체계 구축 미흡 등 11건				
4	"	○○○○ 놀이방	안전교육 미수립 등 5건				
5	"	○○어린이집	종사자인사기록부 미비치 등 8건				
6	"	○○어린이집	응급처치동의서 미비치 등 8건				
7	"	○○어린이집	재직증명서 발급대장 미비치 등 17건				
8	"	○○○어린이집	보육시설내 온수시설 없음 등 8건				
9	2004.6월	○○어린이집	안전교육 미실시 등 3건				
10	"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대장 미비치 등 7건				
11	2004.9월	○○○ 놀이방	산재보험 미가입 등 4건				
12	"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 소홀 등 2건				
13	"	○○어린이집	비품관리대장미비치 등 3건				
14	"	○○○어린이집	산재보험 미가입 등 4건				
15	"	○○어린이집	고용보험 미가입 등 2건				
16			아동건강진단 미실시 등 2건				
17	"	○○○이러이집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미비치 등 4건				
18	"	○○○○○이러린이집	보육아동명부 미비치 등 8건				
19	"	○○어린이집	입소신청자 명부 미비치 등 3건				
20	"	○○어린이집	아동 건강진단 미실시 등 3건				
21	"	○○○어린이집	아동 건강진단 미실시 등 7건				
22	"	○○놀이방	종사자 건겅진단 미실시 등 3건				
23	"	○○○이러리이집	비상대피시설 미설치				
24	" ○○○○어린이집		보육현원대비 보육교사 미확보				
25	"	○○○≥이방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미비치 등 6건				
26	"	○○놀이방	산재보험 미가입 등 3건				
27	"	·	산재보험 미가입 등 4건				
28	"	○○어린이집	산재보험 미가입 등 4건				
29	"	○○○어린이집	보육현원대비 보육교사 미확보				
30	"	○○○놀이방	아동 건강진단 미실시 등 8건				
31	"	○○놀이방	입소신청자 명부 미비치 등 6건				
32	"	○○○놀이방	산재보험 미가입 등 4건				
33	"	○○놀이방	아동 건강진단 미실시 등 11건				
34	"	○○놀이방	산재보험 미가입 등 3건				
35	"	○○○어린이집	비품관리대장 미비치 등 4건				
	1	, = , H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일련번호: 5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교통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LPG특정사용시설 등의 개선 및 정기검사 미실시업소 사후 관리 소홀

[현 황]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및 부적합시설 개선현황>

(2005.1.1 - 2005.12.31)

총대상	Эl	정기검 사미신 청 업소	시설 부적합 업소	미신청 및 부적합업소 중 이행완료 업소			미신청 및 부적합업소 중 미이행 업소			
	··			소 계	검사완 료	개선완료	소 계	미신청	미개선	
1,159	368	218	150	353	217	136	15	1	14	

[위법부당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시설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할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2항 4호 및 5호의 규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경제과에서는 2005.4.8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남동구 간석1동 ○○○-○ ○○○이발관 ○ ○○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업소 정기검사 미신청 통보를 접수 하고 시정지시 하는 등 총218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으며 1개 소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과태료 부 과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2005.4.8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남동구 간석2 동 ○○○-○ ○○어린이집 ○○○에 대한 시설검사결과 부적합 업소 통지를 받고 시정지시를 하는 등 총150개소의 부적합업소에 시정지시하였으나 14개소가 감사일 현재까지 미시정 하였음에도 이 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업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미 이행 업소 및 시설물개선명령 등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과 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축과, 경영재정과, 도시계획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추징(1,721건, 233,928천원)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정부합동감사 및 시 정기감사 처분요구 이행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 개선요구 이행 소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583호, '04.9.1 개정. 이하 "통합규정"이라한다)에 따라 각 군·구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 사업장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부조리 근절 및 사업체에 대한 부담경감 차원에서 2002년부터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동구(환경위생과)에서는 2004년 및 2005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4년에는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등 관련 업종별로 업체수만 파악하고 통합 지도·점검이 요구되는 공통시설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더욱이, 2003년도에 우리 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합지도·점검을 이행치 아니하여 전 군·구가 모두 "개선"요구처분을 받았음에도 2004년에는 단 한차례도 통합 지도·점검을 이행치 않았으며,

2005년에는 건설폐기물 200톤 이상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에 대해서만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1회(4일)에 걸쳐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이행코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2.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 지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경유자 동차나 특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은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그러나, 200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시 전체적으로 체납액 16,312백만원의 추징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남동구(환경위생과)에서는 현재까지 체납액 1,664건 174,843천원 중 재산압류 1,424건 162,438천원(압류율 92.9%)을 조치하였으나, 그 외장기 체납자 240건 12,405천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주거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건축과)에서는 200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행강제금 체납액 40건 28,424천원의 징수를 소홀히 하여 체납처분 등의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2006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28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으나, 그 외 12건에대해서는 신원미상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조치를 지연시키고있다.

3. 시 정기감사 처분요구 사항 조치 부적정

남동구는 2004년 시 정기 감사('04.2.11~'04.2.20) 결과 총 56건 (시정 26건, 개선 1건, 주의 29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으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 14건, 349,551천원 및 감액 2건 75,594천원의 조치를 받은바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2004년 및 2005년 각각 반기보고로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시정 요구 26건 중 7번(압류재산 공매처분 소홀) 건에 대해서는 공매토록 요구 된 29건에 대하여 2004.7.12 최종적으로 공매처분 대상자를 15건으로 확정하였고,

2004.9.7에는 이중 7건에 대하여만 공매처분 최후 통지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5년 7월경 동 건에 대한 처리전말을 제출하면서 납부 4건(10,518천원), 공매 진행 1건, 시설물 멸실 1건, 공부와 실제 현황과 상이 1건 등으로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동 건이 완결되었다고 제출하였다.

또한, 처분요구 11번(기존지구 체비지 변상료 징수 및 체납액 채권확보 소홀) 건에 대해서는 체비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17건 30,661천원)에 대하여 2004년 4월 재산조회 1회 및 재산압류 3건(1,716천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2005년 12월 최종적으로 완결되었다고 제출하는 등 2004년 시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1. 향후 배출업소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지도·점 검을 할 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 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에 따라 반드시 통합 지도·점검 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환경개선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확행 등 환경개선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의 체납액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3. 2004년도 시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중 7번과 11번 은 미결사항으로 관리하되, 진행상황을 정기적(반기 1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행정상 조치] 개선(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르면 일정규모의 건축공사나 건설 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자를 포함)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에 시·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위임)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환경위생과)에서는 각종 종합 또는 정기감사 때마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음에도 고잔동 ○○○-○번지 일원의 도로개설 공사장 2개소와 간석동 ○○○번지 일원의 하수관 정비 공사 등이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임에도 이를 누락시키고 관리하고 있으며,

더욱이 상기 건설사업장의 대부분이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 증설 등의 공사로써 남동구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이므로 사업시행자(도급자)에게 동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킬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를 소홀히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적정하 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금번 감사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공사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규 정에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착공신고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부서에 서 이를 소홀히 하여 적지 않은 수의 건축공사장이 신고미필 로 지적되어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 는 바, 건축공사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에 비산 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함께 받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처 분 요 구]

- 1. 향후 건축공사 및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시설임에도 신고하지 않 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특히, 건축과와 건설과에서는 건축 및 건설공사의 착공신 고시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관련부서 로 하여금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거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5년까지는 최초 토양오염도 검사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5년에서 15년까지는 매 2년에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지침(환경부 예규 제218호, 2002. 2. 8) 제5조 규정에 의거 동 시설을 설치년도를 기준으로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기준에 의한 검사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이행치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환경위생과)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 ○○○관리소(만수1동 ○○○○)", "○○ ○○주유소(구월4동 ○○○-○)", "○○오일뱅크 ○○주유소 (구월2동 ○○○○-○)", "○○목욕탕(구월동 ○○)", "○○주 유소(논현동 ○○○-○)", "(주)○○물산(고잔동 ○○○-○)", "○○○주유소(구월동 ○○○○)", "○○○○공업(남촌동 ○○ ○-○○)", "SK네트웍스 ○○○주유소(만수동 ○○○-○)", "(주)○○○공장(고잔동 ○○○○○)" 등 10개 업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법정 토양오염도 검사기준대로 오염도 검사를 이행 치 아니하고 있음에도 2006.2.14 토양오염도 검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1회 발송한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1.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대한주택공사 ○ ○ ○ 관리소" 등 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이행토록 촉구하되,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개선(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공중 및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종업원 포함)는 매년 1회 군수·구청장(위탁의 경우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새로이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등의 사유로 사전에 교육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후 공중위생업소는 6개월 이내, 식품위생업소는 3개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환경위생과)의 2004년 ~ 2005년 사전 및 정기 위생교육 위탁실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 점의 경우에는 교육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교육수료자만 통 보하였다는 이유로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소를 파악조차하지 않고 있었으며,

미용업이나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도 업소가 많다는 이유로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소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특히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종업원까지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은 물론 영업주의 교육 수료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전 업종에 걸쳐 위생교육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극히 부당하게 처리하여온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1. 향후에는 공중 및 식품 등 관련 영업자 단체 또는 협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영업허가 또는 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위 생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는 위생교육의 수료 여부를 반드시 파악토록 하고, 아울러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관련 단체 및 협회와 협의하여 현행 실시하고 있는 위생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식품접 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르면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 명령 등 이행확인이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개선(또는 시정)기간 내에 개선을 하고 이행결과를 즉시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가중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환경위생과)에서는 2004~2005년간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제조· 가공 및 접객업소) 151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수 명령과 시정명령을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이행사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이들 업소 중 일부 식품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들에 대하여 이행완료보고를 제출토록 조치하지 않고 제출기한이 지난 후 담당자들이 직접 현지 출장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출장복명을 하는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에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2004년 및 2005년 식품위생관리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군·구 위생행정 통합시스템(행정자치부 제작 보급)"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신규 허가·신고·영업자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사항을 지속적으로 입력·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위탁·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2004년도에는 감사원에서도 취약분야 중 환경·위생분야에 대한 일부 기초자치단체 감사를 통하여 동 프로그램의 활용을 적극 권고하는 한편, 동 자료의 입력·관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남동구(환경위생과)에서는 2004년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중 일부 표본 차출(10개소)하여 자료입력 상황을 조사하여 본 바, ○○○ 유흥주점(간석1동 ○○○-○)에 대해서는 2004.8.25 종사자명부 미비치로 시정명령을, ○○(간석1동 ○○○-○)에 대해서는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일 현재까지 입력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이후 사후관리에 소홀하였다.

[처 분 요 구]

- 1. 향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 명령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 기한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기한 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하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가중처분 등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 하여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행정처분이나 영업허가 내용이 "위생행정 통합시 스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나 시스템 관리에 만전 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집단급식소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구청장에 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 시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환경위생과)에서는 타 부서로부터 공장등록 현황이나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시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들 시설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지도·점검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결과 80인 이상 기업체중 36개소, 50인 이상 수용중인 사회복지시설 7개소 및 국·공립 보육시설 20개소 등 총 63개소의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시설이 미신고 시설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처 분 요 구]

- 1.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 신고대 상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시로 자료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시설임에도 누락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급식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 다.
- 2. 아울러, 50인 이상 기업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고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집단급식소 폐쇄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폐기물 배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폐기물관리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르면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배출 종료후 15일 이내에 처리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청소과)에서는 2004년에는 배출자 신고를 한 449개소중 407개소만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17개소는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5년에는 총 392개소의 신고자중 322개소만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공사가 종료된 배출자중 19개소가 현재까지도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4.12.16, 2005.3.16, 2005.12.23 3회에 걸쳐 처리실적제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외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여온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배출 종료후 15일

이내에 처리실적을 제출토록 하되,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법 적용을 엄격히 하여 건설폐기물로인한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 배출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과

[행정상 조치] 주의(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4]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함에 있어서 배출자는 위 기준에 적합하게 적정용기에 적정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치명령을 한 이후에는 그 이행실태를 다시 확인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청소과)에서는 2005년도 폐기물처리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다가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하여 조치명령 처분을 하였는바, (주)○○○○ 제2공장, (주)○○○○ 및 ○○산업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처분을 하면서 "폐기물이 맨홀 등으로 유출될 우려가 없도록 보관시설 개선" 등 개선기간 및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분하였으나,

악취 등으로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적합토록 보관"하라고 포괄 적으로 명시하였고, 더욱이 개선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처분함으로써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이러한 위법·부당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1. 향후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특히 조치명령 등 개선을 요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선기한과 개선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가중처분 등 법 적용을 엄격히 적용하여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의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방치 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오수처리시설 지도·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시설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516호. '02. 4. 25) 제4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583호. '04. 9. 1) 제6조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또는 청·녹·적 등 등급을구분하여 연1회 내지 연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시공한 자(시공자의 파산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청소과)에서는 2005년 총 59개의 오수처리시설

중 11건만 시료채취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및 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7개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들시설 중 7개 시설은 이행보고 기한이 경과되었으나 감사일현재까지도 이를 제출치 아니하였음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였다.

[처 분 요 구]

- 1. 2005년도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 48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개선명령 이후 이행완료 보고를 하지 아니한 7개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런번호 : 6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일회용품 사용 규제·단속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남동구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슈퍼 등 모든 판매업소에서 는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청소과)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한 단속업무를 8급 ○○○(전임자)으로 하여금 동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바, ○○○은 '04.5.6부터 '05. 2월까지 동업무를 담당하면서 '04. 6월 중순(날짜 미상) 23:00경 "○○일 식"에서 ○○백화점 식품팀장으로부터 일회용품 불법사용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과 10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04. 6월 중순(날짜 미상) 18:00경 및 7월 초순 18:00경 2회에 걸쳐 ○○○ 안전팀장으로부터 단속완화 부탁과 함께 상품권 10만원권 2매를 받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청으로부터 '04.12.2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남동구 자체 징계(감봉3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소과)에서는 '05. 2월부터 동 업무를 기능 8급 ○○○에게 분장하였는바, '04. 6월 전임자 ○○○이 복명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였다고는 하나, 2~3일에서 5일 단위로 200개소에서 400개소에 달하는 업소를 방문 계도한 것으로 복명함으로써 하루에 평균 80여 개소에 달하는 업소를 방문·계도한 것으로 복명하였으며(2004년 및 2005년 자체 단속 실적은 거의 전무함),

자체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2004년 적발한 3개 업소의 경우확인서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서식에의거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환경·위생 등 타 단속의 경우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일련번호와 기관장(부서장) 실인을 받은확인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유독 일회용품 사용단속에 사용하는 확인서는 이러한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아울러, 일회용품 단속이나 지도· 계몽을 함에 있어서 부서 또는 팀의 인원이 부족하여 여력이 없다고는 하나, 거의 매일 을 혼자 출장하여 형식적인 단속에 임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단속 및 계도를 하도록 조치하되 반드시 2인 이상 단속을 실 시하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처 분 요 구]

- 1. 향후 일회용품 사용 규제·단속을 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지 도·단속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되, 반드 시 2인 이상, 필요시 시민환경감시원 등을 활용, 합동 단속 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규제·단속을 포함한 모든 지도·단속

시 사용하는 확인서에는 반드시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실 인을 날인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 지도·단속 시 발 생할 수 있는 제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의료법 제32조의2 및 보건복지부령 제186호(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사용중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보건소)에서는 "〇〇〇외과의원", "〇〇의원" 등 2개소가 '98. 10월 또는 '98. 12월 검사를 실시한 이후 6년 이 경과한 '05. 2월 및 '05. 4월에 실시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 내과의원"은 '02.8.23 검사를 실시한 이후 3년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 문이나 유선으로 촉구만 하였으며, "○○내과", "○○○○○ 치과" 및 "○○○치과" 등 3개소는 '03.1월 검사를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검사를 이행치 않고 있어 검사 시한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1. 검사시한이 경과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검사를 이행 토록 조치하되,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향후에는 검사주기(매 3년에 1회)를 준수하지 아니 하고 4~5년이 경과된 후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결핵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결핵예방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소 장은 신고 된 결핵환자에 대하여결핵예방 및 의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지도를 하는 등 적절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 소재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 된 결핵 환자는 2004년 171명, 2005년 229명 등 모두 400명에 달함에 도, 남동구(보건소)에서는 통보된 결핵환자나 이들의 가족 또 는 동거인들에 대해서는 인력여건이나 환자 또는 가족들의 기피 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5년 한 해 동안 인천에는 총 1,265명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으며(전국 66,115명의 2%), 이 중에서 특히 결핵환자는 734명으로 전체 전염병 환자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일보 2006.2.7일자 18면) 결핵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한 검진이나 보건교육

은 매우 시급한 실정임에도,

남동구 보건소에서는 인력부족이나 가족 등의 기피를 이유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결핵환자나 그들의 가족 또는 동거인들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 의원에서도 역시 환자 본인에 대해서만 치료· 관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보건 소의 인력여건이나 환자 또는 가족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환자와 그 가족 또는 동거인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결핵환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구월1동 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

[현황]

대 상 지 역	총차량대수	주차면수	시행계획 수립	시범실시확정	비고
구월1동 0~00통 0000~0000번지일원 11,739명/3,649세대	2,776대	2,038면	2004.2.23	2004.7.23	미시행

[위법부당내용]

주차장법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설치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하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12조의2 규정에따르면 주택가 도로에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별로월단위, 분기단위, 반기별 또는 연단위로 주차대상 차량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심지 차량의 급격한 증가추세와 주택밀집 현상으로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에서는 2004.2.23 원활한 교통소통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위 시행방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에 앞서 주차권배정 신청절차 및 배정순위,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단속 방안등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후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 유관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전문민간기관 위탁 등의 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동구 교통과에서는 실태조사,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등 운용방안에 따른 선행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2004.3.31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월시범지구 주차구획선 정비공사를 24,581천원에 수 의계약 체결하여 2004.4.19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교통과-37366(2004.12.1)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상황 자체분석결과」에 의하면 시범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주차장 확보율이 73%로 낮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의 선행조건인 90%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점 들이 나타남에 따라 2004.7.30 사업 확정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도 관련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비 24,581천원의 사장이 우려 되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한 바 있다.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사업 시행 전에 필요한 선행조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사전검토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정비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불법옥외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관풍치ㆍ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광고물 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의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이의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또는 「인천광역 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물의 종류·크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정비과에서는 「200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물 정비계획(○○○)」 및 「2005년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외 1)」 등에 의거 2개 년도에 걸쳐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된지역에 대하여 1,36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추진하면서 자진정비를 불이행하거나 철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6. 2. 24. 감사일 현재까지 미정비 된 채로 남아있는 3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정비과에서는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 후 미 정비된 채로 남아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정비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표시기간 미연장 광고물에 대한 행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 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로 써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 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다시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 내지 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 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

여야 하며,

- 같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광고물 등의 제거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 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정비과에서는 2006. 2.24. 감사일 현재까지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중 남동구 간석동 ○○○-○○번지 조경연이 설치한 돌출간판 등 664개의 광고물이 표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적게는 57일부터 많게는 418일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664개의 광고물중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이 496개나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들 광고물에 대해 제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정비과에서는「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그 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에 위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782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설계변경 조치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공 사 명 : ○○○일원 ○○○○ 증설공사(2차분)

나. 도 급 자 : ○○건설(주) 대표 ○○○

다. 계약금액 : 2,066백만원

라. 공사기간 : 2004.08.10~2006.04.08

2.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04.06)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 현장에 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관련 구조물 시공을 위한 거푸집의 경우 유로폼으로 시공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유로폼으로 설계 및 변경조치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의 경우 집수정 구조물 시공을 위한 벽체시공시 186㎡에 대하여 유로폼으로 시공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 보고 등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감액:1,782천원 상당)이 있으며,

현장에서 시험실적을 확인한 바, 레미콘에 대하여 레미콘 회사에 시험의뢰 등 적정하게 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1. 과다하게 계약된 1,782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조치하고
-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
- 3. 추후 시행하는 모든 공사를 감독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시행 단계별로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공사로 하여금 자체 검 측결과를 제출받아 검측후 후속 공정을 추진(검측서 확행)토록 조치

[일련번호: 6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원가계산 작성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붙임 현황 참조

2.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04.06)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설계시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관련시방에 의거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이와관련 ○○농장잔여지보수공사 및 간석동○○○번지일원하수 관정비공사의 경우 현장사무실에 대하여는 재료비·노무비·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합산하여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루네오부근도로개설공사 및 간석동○○○번지일원하수관정비공 사는 토목공사표준시방서에 부합되고 경제적인 프라임 코팅제를 RSC-3로 설계 하여야 하며, 만수6동남동구청주변굴착복구공사 및 간석동○○○번지 굴착복구공사에서는 현장내 발생된 화강석 보차 도경계석에 대하여 골재생산 업체에 제공함이 경제적 임에도 재 활용업체로 건설폐기물 처리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초 대한 사실이 있음

또한 관내일원 집수받이 준설공사(1차, 2차)에서는 집수받이의 준설토 특성을 감안 인력50%와 준설차량50%의 조합으로 설계 하였으나 인력단가를 표준품셈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설계하는 등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설계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일련번호 : 6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31,747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붙임: 하수도사용료 체납집계표

2.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3.10.27) 제13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을 적용 징수하게 되어있고, 그 부과는 수도급수사용 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와 징수에 있어 지방세법 및 급수조례를 준용토록 명기되어 있음

또한 동조례 21조(독촉장) 및 지방세법 제28조의2(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등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위건 관련 남동구 관할 하수도 사용가에 대한 체납상태를 확인한바, 2002년에는 체납건수 362건에 4,010천원이 2003년에는 체납건수 616건에 19,915천원이, 2004년에는 체납건수 1,192건에 45,604천원이, 2005년에는 체납건수 9,530건에 162,217천원, 합계 체납건수 11,700건 231,746천원 상당이 감사일 현재 체납 되었음에도 이에대한압류조치 등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1.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 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 2. 체납된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 납액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도모

[일련번호 : 7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가. 지하수 개발 · 이용관련 하수도 사용료 부과건수
- 나. 지하수 시설 관리대장
- 다. 지하수 사용 수용가 내역서(남동・연수수도사업소)

2.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3.10.27) 제13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을 적용 징수하게 되어있고, 그 부과는 수도급수사용 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부과할수 있음. 또한 부과와 징수에 있어 지방세법 및 급수조례를 준용토록 명기되어 있으며, 동법제14 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량 으로,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 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건 관련 남동구 관할 하수도 사용가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사항을 확인한 바, 지하수 시설대장상 준공된 지하수 사용가가 314건 이나 남동·연수수도사업소에서 부과되는 건수는 175건에 불과하여 218건이 누락 되었으며, 이 누락건은 부과대상인 생활용수 사용가 및 미부과대상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소홀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도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지하수 사용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는 신고 효력을 상실함에도 현장 확인결과 남촌동 ○○-○번지 ○○○ 외 3개 지역에서 지하수가 개발 완료 되었거나 사용중임에도 이에대한 준공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1.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는 지하수 대상자와 자체 관리하는 지하수대상자와의 차이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실시 하여 누락 부과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지하수 신고자에 대하여도 관련법에 의거 위배되는 자에 대하 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독려 및 부과에 만전을 도 모
-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

[일련번호: 7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폐기물 반출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붙임 폐기물처리현황 참조

2. 위법부당내용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및 아스콘의 경우에는 중간처리 업체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에 대하여는 수도권매립지에 위탁 및 매립 처리 하여야 함.

위건 처리관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공사 감독자는 배출자인 남동구청장을 위임하여 건설 폐기물 배출시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에 확인 을 필하여야 하며 동사항의 배출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서 추후 준공시 당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물량 정산에도 철저를 기할수 있으나,

건설과에서 시행한 위 붙임 용역의 경우 권한도 없는 현장대리인 및 현장관리기사 등에게 반출관리 확인을 위임 하는 등건설폐기물 반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1. 최근 현장대리인과 폐기물처리업자가 결탁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물량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건이 발생된 바, 이는 반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사건으로
- 2. 감독자는 폐기물 반출시 반드시 폐기물간이인계서에 확인을 함으로서 관련법 준수 및 물량 정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일련번호 : 7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교통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원가계산 작성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붙임 공사현황 참조

2.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04.06)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설계시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관련시방에 의거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이와관련 구월4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사무실에 대하여는 재료비·노무비·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로 합산하여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남촌동 ○○○-○○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토목공사표준시방서에 부합되고경제적인 프라임 코팅제를 RSC-3로 설계 하여야 하며, 간석1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의 U형측구· I형측구·

담장기초와 간석2동○○○-○번지 공영주차장건설공사 및 구월4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구조물 타설을 위한 거 푸집 반영시 유로폼으로 시공이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는 유로폼 으로 설계 하는 것이 타당 함에도 합판거푸집으로 설계하여 예 산을 낭비하는 등 설계 및 공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일련번호: 7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하천정비공사 시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공 사 명 : 장수동 ○○농장 일원 농로 및 하천정비공사

나. 도 급 자 : (주) ○ ○ 토건 ○ ○ ○

다. 계약금액: 109백만원

라. 공사기간 : 2005.04.06~2005.06.13

2. 위법부당내용

위 하천정비공사는 기존 하천내 석축의 유실 및 이로 인한 하천 변 도로의 균열 및 침하구간을 정비하고자 시행한 공사로서(장수동 ○○○-○번지(천) 연장 174m, 산○○○(임)·산○○○-○(임)·○○○-○(전) 연장116m) 공사 구간은 장수천(지방2급 하천)에서 380m 떨어진 상류 지류이며,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으로서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대상이 아닐지라도하천수가 장수천으로 유입됨을 감안하여 이를 정비할 경우 재해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 및 자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 상태와조화는 물론,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를 시행함이 바람직함.

이와 관련하여 남동구에서는 장수동 〇〇농장 일원 농로가 석축

침하로 파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이 급한 유속에 의한 석축기초의 쇄굴로 판단하여 하천바닥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소하천 바닥을 콘크리트 두께10cm로 시공하도록 설계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소하천 바닥의 콘크리트 시공에 대하여 생태적으로 부당함을 주민 및 시민단체에서 주장함에 따라 기 시공된 소하천 바닥 콘크리트 포장구간(연장 290m, 두께 10cm)에 대하여 2005.06.03 설계변경 방침을 받아 깨어내고 잡석부설(체적:153㎡)로 변경하는 등 소하천정비계획을 생태적 검토를 소홀히 수립함에 따라 바닥콘크리트 시공비 및 재료비 6,341천원 상당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1. 추후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시 현장 여건을 충분 히 감안하여 위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조치하고
- 2.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토록 조치

[일련번호: 7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경영재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징계, 훈계

[제 목] 회계질서 문란 및 공사중지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공사계약후 착공이 계약서에 정한 기일보다 늦게 착공하고 게이트 볼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함에 있어 발주방법의 설계변경,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심의 보류 등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은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음.

1. 게약서에 정한 착공일보다 17일 지연되어 착공하였음에도 계약 변경 조치 부적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에 계약상대자는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공사예 정공정표 , 착공전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착공신고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는 본 계약서에 2004.2.13일 계약하고 2004.2.19일 착공, 2005.8.12 준공기한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착공일보다 17일이 경과한 2004.03.08 착공계

를 제출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인 ○○○ 건설외1개사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지연사유를 확인한 후 계약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착공계를 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2.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 등 공정관리 부적정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만회공정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에서는 2005. 09. 23 시설중 일부인 게이트볼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내부방침을 득한후 24일이 경과한 2005. 10. 17에야 시공자에게 설계변경 반영 하도록 통보하였고, 2005. 11. 29 시공사에서 물량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을 요청하자 당초 준공기한인 2005. 12. 05을 3일 남겨둔 상태에서 2005. 12. 02 공사 중지를 하였다.

이와 관련 공사중지일 기준 골프연습장 중복공정을 제외한 5.71%의 공정이 이행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 공정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게이트볼장을 골프장으로 시설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관련법 검토 등 면밀한 검토를 미실시하여 2005. 10. 18 및 2005. 12. 02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공원 위원회의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2005. 12. 16 내부방침을 골프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타절 준공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하여 당초 준 공 예정일인 2005. 12. 05 사업이 미준공 되는 등 공사추진 관리 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법 검토와 변경계획의 타당여부 등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등 관련규정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일련번호 : 7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 건축허가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도림지구 건축허가 부적정 현황(붙임참조)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배치도에는 대지종·횡 단면도,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허가 담당공무원은 대지 고저차 유무, 주차줄입 가능여부와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도로 및 지반고를 확인하여 건축계획이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위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부서에서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하여 적합하다고 회신이 되었고, 사용승인시에는 지구단위계획 및 오수처리시설이 적합하 다고 회신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다.

또한 건축허가부서에서는 2001.12.28 사업시행인가시에 통보된 도면을 참고하여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적합한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축사 현장조사서에는 대지 고자차가 공란으로 되어있고, 대지종횡단면도에는 고저차가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기록을 하도록 보완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는 35미터 도로변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하고 8미터 도로에만 차량진출입이 출입이 기능하도록 되어있고, 구획정리사업 부서에서는 기반시설(도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부지가 약 1.8미터가 도로보다 낮게 조성되므로 인하여 도로개설시에 옹벽 설치 등 대지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후 건축부서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남동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축협의 및 사용승인시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고 회신하여 본 대지에 차량이 주차 할 수 없도록 건축되었으며, 주차장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등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현장조사를 잘못하여 주차장법령을 위반되게 설계 및 감리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한 건축사위법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시고,

주차장법령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주차장 법령에 따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기 취하시기

바라며,

구획정리사업지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적합여부, 지형이 나타나는 도서 열람 등 관계부서 협의·검토 및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유사한 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유소 증축시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건축허가 현황

위 치	건축주	건축허가	사용승인	대지면적 (m²)	용도	연면적 (m²)
만수동 〇 〇	000	03.09.02	04.01.30	1736.4	위 험물저장 및처리시설	863.23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의 나목 단일용도의 시설 러목의 위험물판매시설인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대하여는 부지면적 1천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유소 증축허가시 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대상으로 건축허가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남동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축허가(증축)시에 교통영향평가없 이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건축허가(증축)를 하는 경우 증축되는 면적에 따라 환경·교통·재 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일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후 증축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전입주 위반건축물 조치소홀

[위법부당내용]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제1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한다)에 대하여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제1항에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 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구월동 ○○○○-○번지 등 4건이 사전입주된 위법건축물이 있음에도 고발·이행강제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건축법을 위반하여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없이 사용승인

[위법부당내용]

○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현황(붙임참조)

공동주택을 사용승인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1항에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후에 공동주택 사용승인하여야 함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없이 부적정하게 사용승인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사용승인 업무처리시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후 사용승인토록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재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축허가서 교부시 면허세·국민주택채권 미징구 [위법부당내용]

건축허가서를 교부 할 경우 지방세법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재1항에 의거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면허"라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주택법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제1항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동구에서는 간석동 ○○○-○○○번지 등 14건의 건축 허가의 경우 건축허가서 교부시 면허세(387,000천원) 및 국민주택 채권(1-,340천원)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6.02.24일 감사일 현재까지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건축허가서 교부시에 각종 제세공과금(면허세 채권 등)을 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를 연기할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확인 후 착공신고 연기처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과, 건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차장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 1항과 제2항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당 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의 9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하면 기계 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관리자는 당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기검사를 2년 주기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관리책임이 있는 자가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원상회복 대집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동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구월동 ○○○○-○번지 등 8건이 주차장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은 물론 물건의 적치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 사 유효기간이 20건이 경과되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최소 1년월에서 최장 6년 11월까지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사용중이거 나 방치되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주차장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용도변경·물건적치 및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채 방치 사용하고 있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

[일련번호: 8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리소홀

[위법부당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함) 제1조에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그 지 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생략)등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중용도변경 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중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실등의 용도로 15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38호, 2001. 6. 20) 제4 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 및 특별단속반을 편성하 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순찰· 점검결과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위반행위자를 즉 시 고발 및 과태료의 부과 장수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인 장수동 453-24번지 불법 건축물(18제곱미터)이 축조되었음에도 철거·시정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장수동 산〇〇〇-〇번지 산림이 약 25그루가 벌목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으며, 장수동 〇〇〇-〇번지, 수산동 〇〇〇-〇번지 승마장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후 농지, 축산 오·폐수 등 불법행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통보하지 아니하여 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철거·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특히 무단벌목·축산 오폐수 등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성 및 불법행위에 대한 통보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행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 20호 및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시행하고자하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등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적합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의건설 기준등에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2항에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로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규정 제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동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동주택의 배치 및 공동 주택 주출입로의 폭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주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한 설계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사위법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시 건축심의 미 이행 [위법부당내용]

건축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소방에 관한사항은 건축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사항인 경우에는 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제7조 제1항에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이상 인 공동주택은 인천광역시 심의사항으로 16층이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구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주택법 규정에 의한 경미

한사항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층수변경의 경우 배치·입면 및 형태등의 변경없이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층수이하로의 변경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03년 11월 28일 건축심의를 거친후 2004년 04월 19일 사업계획변경시 건축심의를 거친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야함에도 건축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 의거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건축 심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과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심 의 후 사업계획변경승인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 전법(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중인 정비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종전법률에 따르 도록 되어있고,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9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경과한 날 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남동구에서는 서창동 ○○○-○번지등 2건의 재건축주택 조합의 사용검사일이 3월 경과한 이후 2006. 02. 24 정기감사 당 일까지도 주택조합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회계감사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의한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경영재정과,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경징계3, 훈계3

[제 목] 〇〇**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부도처리업무 소홀 및 지급보증금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남동구에서 시행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2004. 3. 9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와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추진하던 중 2005. 3.25 사단법인 금융결재원으로부터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최종부도)가 통보되어 사업주무부서인 건설과(구도시정비과)에서 2005. 4. 7 과 같은 해 4.11, 4.20 세 차례에 걸쳐 (주)○○엔지니어링으로 부도에 따른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계약부서인 경영재정과에도 2005. 4.25과 같은 해 9. 5 촉구하여 부도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청하였다.

남동구에서는 용역사의 부도로 인해 더 이상의 설계용역추진이불가할 시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이행보증)규정에 따라 기술용역이행보증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통해 해당사업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거나 보증서상의 보증금을 채무자 또는 조합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용역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동구에서는 위 용역사업의 계약주무부서인 경영재정 과는 사업부서인 건설과(구:도시정비과)로부터 용역사의 부도사실을 2005. 4.24 최초로 통보받고도 5개월이 지난 2005.10. 4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선금급 및 계약이행보증 청구를 하여 2005.10.10기술용역이행보증계약서 제10조(보증계약의 효력 상실)에 따라 계약기간(2004. 3. 9~2004. 9.14)이 만료되어 보증이행이불가하다는 사실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남동구가 보증조합이 이행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한 사실은 2004. 8. 4 실시설계(안)미확정사유로 설계용역을 중지하였는데도 남동구(경영재정과)에서는 보증이행을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에 설계용역중지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용역업체 부도 이후에는 지체 없이 부도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도사인 (주)○○엔지니어링으로 기지급한 선금급 지급보증금 58,410,000원 및 계약이행보증금 23,475,940원 총81,885,940원의 회수가 불가하자 2005.12. 2 뒤늦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부도처리 업무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예산낭비를 초례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더 이상의 설계용역과업 추진이 불가하고 연대보증에 의한 재계약체결사항 불가로 인해 설계용역이 타절 준공되는 등 사업추진 또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음.

2. 용역성과품 부분납품에 따른 기성검사 소홀 및 공사발주 부적정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준공처리 전 발주자의 사업예산 확보 및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우선시공분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성과물을 납품받아 시설공사를 발주 할 때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기술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을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인수하여야 한다.

남동구에서 시행한 위 용역사업 내 포함된 소염교에 대한 설계추진사항을 보면 과업지시서의 실시설계 일반지침 8항 "실시설계성과품은 발주처 자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위하여 부분납품 요구 시 도급자는 따르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4.12. 3 용역사인 (주)○○엔지니어링에 구두 지시하여2004.12.20 용역사로부터 소염교에 대한 설계 성과품을 납품받아2004.12.29 공사 발주 시행하여 현재 85%공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남동구는 계약상대자간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 23조 일반적 손해로 인한 시비가 없도록 부분 납품된 용역성과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 21조, 22조 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2004. 8. 5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침이나 계획수립도하지 않고 기성검사도 하지 않은 채 부분 납품된 설계 도서를 인정하여 소염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등 설계용역 부분성과물 기성검사 소홀과 시설공사를 부적정하게 발주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환강유역관리환경청에 착수보고 및 환경관리자지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래가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일련번호 : 8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ㆍ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실시설계용역 추진 소홀

[위법부당내용]

남동구에서 시행한 해수공급시설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수도권 최대의 관광포구인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의 원활한 해수공급 및 이에 따른 연안경관 개선으로 소래포구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 9.22 설계용역 준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설계된 사항 중 저수조의 구조는 해상에서 사석 및 콘크리트구조 물 등으로 물막이를 한 후 집수된 해수를 펌핑하여 소래포구 상 점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담수목적 시설물로서 저수조 구조물 의 안정성 및 담수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지반의 침하나 누수현상 이 없도록 구조물 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설계된 사항을 보면 해상의 연약지반(뻘)에서 시공되는 구조물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반조사를 위한 보링도 시행치 않고 과거 인근해역에서 사용된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도록 과업 지시 함으로서 설계사에서는 정확한 기초지반조사에 의한 지반분포 결과치가 아닌 해상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저수조(콘크리트구조물) 자체 자중에 의한 지반침하만 예측하고 설계하였다.

설계사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반침하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초사석 공사를 최소 H= 1.5m이상은 확보되어야 지반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과 분석 보고하였는데도 남동구에서는 위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사비고가 및 예산부족 등을 들어 기초사석을 H= 0.5m로 축소 설계하도록 지시하여 현재 시공된 저수조를 보면 일부구간은 지반의 연약화로 부등침하가 이루어져 구조물이 안정되지 못하게 시공되었고 누수현상 등이 발생되자 쉬트 방수지를 구조물 제체에 2중으로 도포하는 등 임시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현장 확인감사 결과 Piping현상으로 구조물의 침하는 기간이 경과 될수록 심할 것으로 보인다.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호안이나 제방구조물 및 저수조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시에는 해안지역의 특수성(뻘충)이 있기 때문에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부등침하로 인한 구조물 제체침하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저면매트부설 또는 기초사석을 지반구성 분포도에 따라 적정한 단면을 결정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계 시 지반기초조사는 매우 중요 한 사항인데도 남동구에서는 당초설계 시 지반조사를 위한 보링조사도 실시하지 않고설계하였으며, 설계자가 제시한 기술검토 사항도 무시하는 등 구조물안정성에 우려가 있도록 실시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이러한 사래가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설계 발주 시에는 부실설계가 안 되도록 반드시 최소한의 기초조사비용이라 도 반영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는 사유를 들어 설계자의 기술검토 사항까지도 무시하여 부실공 사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122,333원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준공검사업무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공사감독자는 인천광역시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사 착수 및 준공단계 시까지 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대로 감독자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2조(준공검사 등)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증빙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 등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3조,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 55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여 당초계약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사로 하여금 즉시 보완 조치토록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동구에서는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2005. 5.15 도급사인 〇〇건설(주)로부터 준공계를 접수받고 준공검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증빙서류(환경보전비, 각종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가 도급사로부터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은 준공 시 사용내역에 따라 정산 처리하고 미집행금액은 반납토록 하여야 하는데 준공서류(계약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된 도급사의 준공내역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서 퇴직공제부금 정산금액2,122,333원(계약금액 6,120,733원 , 공제부금 수납금액 3,998,40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준공검사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공제부금 정산액 2,122,333원에 대해서는 도급사로 하여금 즉시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래가 없도록 준공검사업무 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경징계2, 훈계3

[제 목] 환경영향평가이행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및 관련법 준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남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서 공원조성 면적이 1,480,240㎡, 지정 항만내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75,000㎡ 규모로 시행되는 대단위 공원조성사업이므로 당해사업으로 인한환경피해를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2000. 7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하여 평가협의기관을 통해 2002. 6월 심의 완료하였음.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중환경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관련되는 영향정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있도록 평가서에서 제시한 저감방안이나 이러한 방안과 관련하여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

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남동구에서는 ○○공원조성사업의 일부인 주차장부지공사를 2004. 8.23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12.29 소염교 건설공사 또한 착수하여 현재 주차장부지조성공사는 97%, 교량건설공사는 85%의 공정으로 각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공사착공 당시 한강유역관리환경청(구:○○지방환경관리청)에 공사착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제10장(P445)에서 제시한 사후환경영향조 사계획에 따르면 공사 중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결과가 상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모니터링 측면에서의 사후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즉시 협의내용을 점검 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내용 을 한강유역관리환경청(구 : ○○지방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수도권해양생태계조성사업은 전체공사가 아닌 일부에 한한 우선공사 목적으로 주차장부지조성 및 교량공사를 발주 추진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평가협의기관의 사전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 규정사항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법규위반으로 인해 환경협의기관인 한강유역관리환경청에서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관련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는 사래가 발생되도록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환강유역관리환경청에 착수보고 및 환경관리자지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래가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일련번호: 8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용자권한부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적전산사용자권한부여내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코드	사용자명		명	권한부여일	비고
토지(임야)기본정정	LRGDC002000W	0	0	0	2005. 11. 15	
토지(임야)연혁정정	LRGDC003000W	0	0	0	2005. 11. 15	지적전산자료의정비
공유지연명부정정	LRGDC004000W	0	0	0	2005. 11. 15	(시·군·구지적직7급
대지권등록부정정	LRGDC005000W	0	0	0	2005. 11. 15	이상)
집합건물소유권정정	LRGDC006000W	0	0	0	2005. 11. 15	

2. 위법부당내용

- 소관청은 지적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적 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담당자 사용권한을 구분하여 사용자 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는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제13조 및 같은 규정 별표4 기준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정비(소관청 : 오기정정)는 시·군·구 지적직7급이상의 지적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원지적과에서는 조상땅찾아주기, 소유권

정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9급 ○○○에게 사용자권한부여기준상 권한부여대상이 아님에도 지적전산자료의정비(프로그램명:토지(임야)기본정정,프로그램코드 : LRGDC002000W, 프로그램명 : 토지(임야)연혁정정, 프로그램코드 : LRGDC003000W, 프로그램명 : 공유지연명부정정, 프로그램코드 : LRGDC004000W,프로그램명:대지권등록부정정, 프로그램코드 : LRGDC005000W, 프로그램명 : 집합건물소유권정정, 프로그램코드 : LRGDC006000W) 권한을 시·군·구 지적직 7급이상의 지적업무 담당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지적전산자료의 정비(소관청 : 오기정정) 권한을 2005.11.5일부터 현재(2006.2.16)까지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어 사용자권한 부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관계법령 및 사용자권한부여기준에 따라 사용자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조회 권한은 해당권한부 여대상에게 부여하여 지적전산자료의 보호관리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민원지지적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토지이동 지연처리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목변경지연처리 현황

대 상 사 업	토지소재지	토지이동신청일	처리일자	비 고 (지연처리기간)	
○ ○ 마을주거환경	구월동〇〇〇-〇〇	2005.9.9	2005.9.27	14일	
개선 사업지구	○ 외45필지	2000.3.3	2000.3.21	1 년	
○ ○ 보건소~수인					
산업도로간도로개설	장수동○○○-○	2005.9.16	2005.9.26	6일	
공사					
	간석동○○○-○외1	2005.8.25	2005.9.5	5일	
	3필지				
공원촌,○○마을주	간석동○○-○○외1	2005.3.4	2005.4.12	33일	
거환경개선사업지구	3필지	2000.0.1	2000.1.12	00 2	

2. 위법부당내용

○ 토지소유자는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 게 되어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관 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토록 되어있으며 소관청은 지적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지목변경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원지적과에서는 도시계획과-1518토지지목 변경신청 2005.3.4)호 및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보상과-3323 (토지지목변경신청 2005.9.16)호 도시계획과-7523(토지지목변경신청,2005.9.9)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과-3629(토지지목 변경신청,2005.8.25)로 신청한 지목변경 신청을 특별한 사유없이 5~33일 지연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토지형질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준공 등으로 인하여 관련부서 에서 지목 변경등 토지이동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일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처리기한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지연통지 등 조치를 취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토지이동신청 지연에 대한 과태료부과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목변경 지연처리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토지 목록

F 기 시 케	지번	지 목	면 적	지목변경지목	준공일자	신청일자	비고
토지소재	시민 		민 색				(지연기간)
남촌동	000-0	답	2,496	전	2003.2.21	2005.6.28	2년2월
서창동	000-0	답	1,777	전	2002.3.4	2005.5.24	3년
	00-0	답	703	전			
남촌동	00-0	답	10	전	2002.11.20	2005.7.11	2년6월
	00-0	답	814 전	전			

2. 위법부당내용

○ 토지소유자는 지적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 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지적법 제5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 행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 사실, 과태료금액등을 과태료부과기준(지적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원지적과는 2005. 6. 28 민원인 ○○○가 신청한 남동구 남촌동 ○○○-○번지 지목변경(답→전)신청과, 2005, 5. 24 민원인 ○○○ 외4인이 신청한 남동구 서창동 228-3 번지 지목변경(답→전)신청과, 2005. 7. 11 지목변경 직권처리한 남촌동 ○○-○, ○○-○, ○○-○, (답→ 전)에 대하여 지적법 제5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지목변경신청지연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토지목록의 토지에 대하여 련규정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사실, 과 태료금액 등 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과태료를 부과 납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남동연수구지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측량종목변경 및 측량비 반환처리 부당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측량종목변경으로 인한 측량비 반환 현황

종 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토지소재 (신청인)	측량수수료	반환액	종목변경사유
분 할	96 (2004.5.20)	만수동 〇 〇 〇 -〇 (〇 〇 〇)	414,000	42,000	도시계획결정고 시후 측량하고자 현황측량으로 종목변경

2. 위법부당내용

-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 규정』(2004. 12. 27 행정 자치부 예규 제157호) 제9조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의 정 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 무를 종결 하거나 또는 지적현황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 액을 반환하되 측량접수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착오접수한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남동구・연수구지사에서는 지

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2004. 5. 20 지적측량을 의뢰한 민원인 정선옥이 요청한 남동구 만수동 ○○○-○번지 토지분할측량건과 관련 건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된 부분을 분할하여 지적공부정리 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입안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측량하고자 현황측량으로 종목변경 하고 측량수수료 414,000중 종목변경에 따른 차액 42,000원만을 환불하는 등 측량접수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종목변경 처리하여 지적측량 민원인으로 하여금 지적측량의 불신을 초래케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측량접수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수 있었음에도 착오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건에 대해서는 측량수수료 전액을 측량의뢰인 ○○○에게 반 환하시기 바라며,
- 추후 측량접수담당자는 지적측량을 의뢰한 민원건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저촉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접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남동 연수구지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결과도 불비내역

측량종목	의뢰번호	토지소재 및 지번	측량일	측량자	비고
	37	만수동000-0	2004.2.23	000	점유현황기재누락
	107	간석동000-0	2005.4.25	000	측량기하적누락
경계복원	113	만수동000-00	2005.4.26	000	건물현황미기재
	370	수산동00	2004.11.22	000	건물현황미기재
	297	수산동000	2004.8.31	000	건물현황미기재
	306	수산동000-0	2004.9.9	000	건물현황미기재
	265	만수동000-0	2004.8.6	000	복원경계점미기재

2. 위법부당내용

○ 지적측량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경계복원측량)을 하는 때에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측량대 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기재토록 하며 또한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5조제1항 제5호에 의거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위치 현황 을 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규정 제45 조 제3항 규정 및 동규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계복원 측량결과도와 측량 성과도에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 하고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2 내지 3밀리 미터의 원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남동구·연수구지사에서는 2004. 2. 23일 측량한 남동구 만수동 ○○○-○ 외6건의 경계복원 측량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측량대상토지의 지상구조물이나, 점 유현황선을 붉은 점선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원된 경계점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판점, 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거리를 기재하여 주시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성 및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결과도 작성시 붉은색 점선으로 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ㆍ기관명]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남동연수구지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측량기일 지정 부당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측량기일지정 부당 내역

측 량 의	뢰	<u> 추</u> 라조모	토지소재	착수일	완료일	비고	
일 자	번 호	측량종목	지 번	석 구 된	선표된	비고	
2005.7.8	119	분할	장수동00	7. 13	7. 14	1일지연	
2005.7.20	127	분할	운연동000-0	7. 25	7. 26	1일지연	
2005.7.28	130	분할	운연동000-0	8. 2	8. 3	1일지연	
2005.8.26	143	분할	도림동00	8. 31	9. 1	1일지연	
2005.9.30	166	분할	간석동00-0	10. 7	10. 11	3일지연	

2. 위법부당내용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적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 · 면지역은 7일로 하며,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하도록지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과 제4항에 정하고 있으나,
-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남동 · 연수구지사에서는 업무량이 폭주한다는 이유로 2005.7.8 장수동 ○○(토지분할 119)

토지분할측량외 4건의토지분할측량에 대하여 측량의뢰인과 합의하여 측량예정일을 지정하는 것처럼 "일자지정" 사유로 측량기간을 1 ~ 3일 부당하게 지연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동지역은 5일 읍 면지역은 7일의 측량기간을 지켜서 처리하시되 지적측량의뢰인과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업무폭주로 인한 경우에는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지적측량의뢰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측량표지 현황조사 결과 미제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측량표지 현황

년 도	계	측량표	지구분	경 리 H ㅋ	비고
선 또 	A 	삼각점	결과보고 수준점		
2004	20	12	8	미제출	
2003	20	12	8	미제출	
2000	20	12	8	조사결과제출	

2. 위법부당내용

○ 측량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 군수 구청장 은 매년1회 이상 관할구역안에 있는 영구표 지(삼각점, 수준점) 또는 일반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및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가 멸실 · 파손되거나 기타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측량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7호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현황조사 결과보고의 접수가 권한 위임 되어 측량표지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장은 '04.5.10 (지적과-274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측량표지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4. 7. 30까지 보고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정비과에서는 2003. 2004년 측량법 제15 조 제3항에 의한 관할구역안에 있는 측량표지 20점(삼각점 12 점, 수준점 8점)에 대한 현황조사 및 멸실·파손 기타 이상유 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측량표지 현황조사에 관한 업무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측량 법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관할구역안에 있는 영 구표지 또는 일시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및 영구표 지 또는 일시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기타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그 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남동구청 교통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남동공단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공사 일상감사 부 적절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공 사 명 : 남동공단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공사

나. 공 사 비 : 384백만원

다. 일상감사 신청 : 2005.11.08

2.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일상감사업무처리에 관한규정 제3조(대상사업)에 따르면 3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기계 및 기타분야의 단위발 주공사는 시 일상감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남동구 교통과에서는 남동공단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일상감사를 거쳐 공사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남동구 일상감사 만을 거쳐 발주하는 등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로서의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소홀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